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4. 6.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과 제안경위¹⁾

- 「지방재정법」 제45조²⁾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³⁾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님이 '24년 5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조 7,880억원 대비 3.3%, 1조 5,110억원을 증액한 47조 2,990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하생략)

3)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은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3조에 준하여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수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편성기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표 2-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①=②+③	②	③			
총 계 규 모	45,788,052	45,740,517	47,534	47,299,083	1,511,031	3.3
일반 회 계	33,061,762	33,049,200	12,561	34,205,240	1,143,478	3.5
특 별 회 계	12,726,290	12,691,316	34,973	13,093,843	367,553	2.9

○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1,43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 ①'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9,326억 7,6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요청하고, ②세외수입 576억 2,200만원을 증액요청하고, ③지방교부세 45억 6,200만원을 증액요청하고, ④국고보조금등은 726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3,675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 ①'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에 대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920억 2,2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366억 9,8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60억 9,4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억 3,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이며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세계잉여금 2,007억 4,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이입하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1,400만원, 소방특별회계 27억 5,200만원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입하고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376억 4,400만원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또한 △51억 3,400만원

을 감액하며, 주택사업특별회계 △838억 7,2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49억 5,4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임

- 그 외에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②세외수입 885억 4,100만원, ③지방교부세 52억원⁴⁾을 증액요청하고, ④국고보조금등은 △972억 7,7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임

4) 소방안전교부세 52억원
■ 소방헬기 교체 50억원
■ 소방선박 교체 2억원

〈표 2-2〉 세입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47,299,083	100.0	45,788,052	100.0	1,511,031	3.3
	지 방 세 수 입	24,235,274	51.2	24,235,274	52.9	-	-
	세 외 수 입	4,612,872	9.8	4,466,709	9.8	146,163	3.3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303,133	7.0	3,176,113	6.9	127,019	4.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756,186	1.6	746,608	1.6	9,577	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3,552	1.2	543,986	1.2	9,565	1.8
	지 방 교 부 세	151,308	0.3	141,546	0.3	9,762	6.9
	보 조 금	8,725,361	18.4	8,749,957	19.1	△24,596	△0.3
	국 고 보 조 금 등	8,725,361	18.4	8,749,957	19.1	△24,596	△0.3
	시·도비보조금등	-	-	-	-	-	-
	지 방 채	1,690,765	3.6	1,690,765	3.7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83,501	16.7	6,503,799	14.2	1,379,702	21.2
	보 전 수 입 등	1,715,928	3.6	533,230	1.2	1,182,698	221.8
	내 부 거 래	6,167,572	13.0	5,970,568	13.0	197,003	3.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괄표, p.8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45조 7,880억 5,200만원)보다 3.3%, 1조 5,110억 3,1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1조 1,43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 3,083억 2,700만원을 순증 편성하고, '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을 위해 **조정교부금**은 938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477억 900만원 증액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지방세 전출**은 834억 1,000만원, **담배소비세 전출** 65억 7,000만원 증액하였으나, **지방교육세 전출**의 경우, △26억 9,9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하고,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을 포함하여 37개 실·국·본부의 352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의 168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3,675억 5,300만원을 증·감 편성요청한 것임

〈표 2-3〉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 : 백만원, %)

분 야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 감 륜
	예 산 액	구 성 비	예 산 액	구 성 비		
총 계	47,299,083	100.0	45,788,052	100.0	1,511,031	3.3
일반공공행정	8,315,540	17.6	7,935,713	17.3	379,827	4.8
공공질서및안전	1,510,260	3.2	1,487,489	3.3	22,770	1.5
교 육	4,284,554	9.1	4,197,308	9.2	87,246	2.1
문 화 및 관 광	996,634	2.1	977,906	2.1	18,727	1.9
환 경	2,597,619	5.5	2,422,155	5.3	175,463	7.2
사 회 복 지	17,413,826	36.8	17,413,271	38.0	554,869	0.0
보 건	695,836	1.5	621,903	1.4	73,932	11.9
농림해양수산	54,595	0.1	51,357	0.1	3,237	6.3
산업·중소기업 및 에 너 지	568,396	1.2	535,409	1.2	32,987	6.2
교 통 및 물 류	5,898,453	12.5	5,338,169	11.7	560,283	10.5
국토및지역개발	2,613,251	5.5	2,500,572	5.5	112,679	4.5
과 학 기 술	7,307	0.0	7,307	0.0	-	-
예 비 비	118,643	0.3	106,483	0.2	12,159	11.4
기 타	2,224,163	4.7	2,193,003	4.8	31,160	1.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표중 기능별, p.9~11

Ⅲ .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1) 지난해회계연도 세계잉여금⁵⁾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는 지난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326억 7,6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요청 하였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⁶⁾는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 의무경비를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법정정산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⁷⁾
 -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계잉여금(9,326억 7,600만원)은 세입예산중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세입 편성요청하였음
 -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5)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75

6)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7)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에 편성요청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9,326억 7,600만원)에 대해 세출 예산중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1,736억 500만원), ②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872억 8,100만원), ③타 회계전출(551억 3,400만원) 등 이른바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 ④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⁸⁾(3,083억 2,700만원) 하고자 세출예산에 대해 서도 경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8)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9,326억 7,600만원)중 법정 의무경비(3,160억 2,100만원) 정산후 잔액 50%(3,083억 2,700만원)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표 3-1〉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 · 감	추경(안)	주요 증 감 내역
잉여금	0	932,676	932,676	세계잉여금 932,676
순세계잉여금	0	616,655	616,655	순세계잉여금 616,655
법정잉여금	0	316,021	316,021	법정의무경비 소계 316,021
				조정교부금 교부 93,897 ^{주1)}
				재정보전금 교부 47,709 ^{주2)}
				시세징수교부금 교부 31,998 ^{주3)}
				교육청전출 87,281 ^{주4)}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38,593 ^{주5)}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20%) 11,026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5,5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정안정화 계정) 308,327 ^{주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주2) '23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초과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반영

주3) '23년 시세입 초과징수분의 교부금을 '24년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추경 반영

주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①지방세 정산분(834억 1,000만원), ② 담배소비세 정산분(65억 7,000만원), ③지방교육세 정산분(△26억 9,900만원)

주5)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2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예결산 차액의 70%인 385억 9,300만원

주6)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

2)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1조 4,138억 7,100만원)보다 576억 2,2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①**경상적세외수입**(480억 3,800만원), ②**임시적세외수입**(95억 7,700만원), ③**지방행정제재·부과금**(59억 7,200만원)에 대해 증액요청한 것임
 - ①**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재산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정예산(1,838억 9,100만원)보다 △1억 7,400만원⁹⁾ 감액하고 **사업수입**은 SH공사 '23년도 이익잉여금과 관련하여 480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이자수입**은 당초(1,151억 8,0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을 증액¹⁰⁾ 편성 요청한 것임
 - ②**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재산매각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기정예산(1,437억 4,200만원)보다 72억 1,900만원¹¹⁾ 증액 요청하고, **보조금반환수입**은 기정예산(2,482억 3,800만원)보다 1,200만원 증액¹²⁾ 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기정예산(1,542억 3,800만원)보다 23억 4,500만원 증액¹³⁾요청한 것임
 - ③**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부지 무단 점유로 발생된 변상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9) 공유재산임대료 △1억 7,400만원

■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1억 7,400만원

10) 이자수입 2억 1,200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2억 1,200만원

11)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2억 1,900만원

■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71억 9,400만원 ■ 미아배수지 매각 수입금 2,400만원

12) 보조금반환수입 1,200만원

■ 위탁비반환수입(23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위탁비 정산반환수입) 1,200만원

13) 기타수입 23억 4,500만원

■ 한강경찰대 순찰정 구입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5,800만원

■ 공공보건의료재단 잔여재산 반환 22억 8,600만원

3)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고¹⁴⁾, 부동산교부세의 대상을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정예산(1,386억 600만원)보다 45억 6,2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45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인 바,

〈표 3-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교부세 편성요청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지 방 교 부 세	138,606	4,562	143,168
① 보 통 교 부 세	103,604	0	103,604
② 특 별 교 부 세	2,498	0	2,498
④ 소 방 안 전 교 부 세	32,504	4,562	37,066

14)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당초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예상금액 사전통지¹⁵⁾에 따라 본예산에 325억 4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24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23년 12월 29일 112억 6,200만원 증액한 437억 6,600만원으로 통보하였음¹⁶⁾

-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안에는 일반회계중 소방안전교부세 기정예산(325억 400만원)보다 45억 6,200만원이 증액된 370억 6,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회계연도중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교부될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경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바,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소방안전교부세 52억원¹⁷⁾을 증액 편성요청함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내역 통지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①	'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 통보 ('23.12.29)	'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 ②	증 · 감 ③=②-①
32,504	43,766	37,066	4,562

15)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446('23.10.20),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예상금액 사전통지”

16)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1123('23.12.29),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통보”

17) 소방특별회계중 소방안전교부세 52억원 증액교부 내역

- 소방헬기 교체 50억원
- 소방선박 교체 2억원

4) 국고보조금등¹⁸⁾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511)의 경우, 기정예산(6조 9,952억 600만원)보다 1.0%, 726억 7,900만원 증액된 7조 678억 8,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국고보조금**(511-01)은 기정예산(6조 6,322억 6,600만원)보다 630억 5,600만원 증액된 6조 6,953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중앙정부의 내시 등에 따라 세출예산중 **자활근로사업 지원**(179억 5,400만원), **영유아보육료**(139억 9,800만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85억 500만원)등 40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고자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하고,
 -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26억 1,300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13억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10억 4,900만원)등 11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¹⁹⁾은 기정예산(839억 7,900만원)보다 31억 900만원 증액된 870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요청한 바,
 -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16억원),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12억 6,800만원), **직업교육훈련**(12억 800만원)등 3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요청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6억 1,300만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2억 1,300만원)등 4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18)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등”은 ①국고보조금, ②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③기금으로 구성됨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23. 6. 9. 타법폐지, 시행 '23. 7.10)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23. 6. 9. 제정, 시행 '23. 7.10)으로 인하여 기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의 명칭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로 변경

-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금(511-03)은 21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고자 기정예산(2,789억 6,000만원)보다 2.3%, 65억 1,400만원이 증액된 2,854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4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등	6,995,206	72,679	7,067,886	
국고보조금	6,632,266	63,056	6,695,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 지원 17,954 ○ 영유아보육료 13,998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8,505 ○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6,200 ○ 부모급여 지원 4,428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862 ○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 2,770 ○ 중증장애인연금 2,642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882 ○ 마음투자 지원사업 1,086 ○ 교사겸직원장 871 ○ 전통사찰 보수정비 667 ○ 긴급복지지원사업 663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은평구) 632 ○ 장애인의료비 지원 528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487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료) 426 ○ 급식위생관리지원금 385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368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27 ○ 지역자활센터 운영 297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273 ○ 소나무재선충 방제비 200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160 ○ 결핵진단검사 국고보조사업 160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50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143 ○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 128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8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69 ○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43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40

〈표 3-4B〉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등	6,995,206	72,679	7,067,886	
국고보조금	6,632,266	63,056	6,695,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28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6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2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1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3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1 ○ 농업법인 육성지원 10 ○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국비) 7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0.5 ○ 최중증 통합돌봄 운영지원 △10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33 ○ 비료가격 안정지원 △77 ○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150 ○ 국고보조금 △305 ○ 한양도성 보수·정비 △348 ○ 장애수당-기초 △626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1,049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300 ○ 난지물재깡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2,61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3,979	3,109	87,0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1,600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268 ○ 직업교육훈련 1,208 ○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31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109 ○ 새일센터 운영지원 △213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13
기금	278,960	6,514	285,4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기관 지원 2,353 ○ 소아의료체계 구축(국비) 835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769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다문화가족) 746 ○ 결핵관리-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489 ○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305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259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36 ○ 결핵관리-보건소결핵관리(국비) 177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 119

〈표 3-4C〉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등	6,995,206	72,679	7,067,886	
기 금	278,960	6,514	285,4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14 ○ 학교밖 청소년 지원 93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42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37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22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19 ○ 서북병원 결핵관리사업(국비) 1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7 ○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16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운영지원(보조) 6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5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채용 지원 5 ○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국비) 5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 △12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운영 △75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95

5)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내부거래**의 경우, 누리과정보육료 추가지원 등의 사유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기정예산(2,414억 200만원)보다 4.0%, 97억 3,3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3-5〉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세 외 수 입	1,413,871	57,622	1,471,493	
경상적세외수입	815,426	48,038	863,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임대수입 △174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등 △174 ◦사업수입 48,000 ·SH공사 23년도 이익잉여금 48,000 ◦이자수입 21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212
임시적세외수입	590,232	9,577	599,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매각수입 7,219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7,194 ·미아배수지 매각 수입금 24 ◦보조금반환수입 12 ·23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위탁비 정산반환수입 12 ◦기타수입 2,345 ·한강경찰대 순찰정 구입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58 ·공공보건의료재단 잔여재산 반환 2,28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12	5	8,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상금 5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 5
지 방 교 부 세	138,606	4,562	143,168	
소방안전교부세	32,504	4,562	37,066	◦소방안전교부세 4,562
보 조 금	6,995,206	72,679	7,067,886	
국 고 보 조 금 등	6,995,206	72,679	7,067,8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 63,05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09 ◦기금 6,5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8,803	1,008,613	1,287,417	
보전수입등	37,400	998,880	1,036,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세계잉여금 932,676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6,203
내부거래	241,402	9,733	251,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733 ·누리과정보육료 9,73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목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서 기정예산(12조 7,262억 9,000만원)보다 2.9%, 3,675억 5,300만원 증액된 13조 938억 4,3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6A〉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특별회계	12,726,290	367,553	13,093,843	
공기업특별회계	1,821,823	92,022	1,913,845	
수도사업특별회계	970,000	-	97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51,823	92,022	943,845	◦순세계잉여금 92,022
기타특별회계	10,904,466	275,531	11,179,99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57,777	61,091	2,118,869	◦국고보조금 3,998 ◦순세계잉여금 36,698 ◦기타회계전입금 95,995 ◦예수금수입 △75,600
교통사업특별회계	1,545,735	175,936	1,721,671	◦도로사용료 △6,932 ◦부담금 9,560 ◦국고보조금 3,939 ◦순세계잉여금 △37,64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 ◦기타회계전입금 190,012 ◦예수금수입 17,000

〈표 3-6B〉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23,450	341	223,7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세계잉여금 △5,13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976 ◦예수금수입 △500
주택사업 특별회계	2,254,090	146,782	2,400,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임대료 85,914 ◦국고보조금 6,985 ◦기금 41,038 ◦순세계잉여금 △83,872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756 ◦기타회계전입금 40,260 ◦예수금수입 45,700
도시개발 특별회계	1,678,731	3,968	1,682,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 4,5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00 ◦기금 3,339 ◦순세계잉여금 △44,95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26 ◦기타회계전입금 38,593
균형발전 특별회계	178,751	△2,390	176,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세계잉여금 6,09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0 ◦기타회계전입금 △8,414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8,658	936	9,5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세계잉여금 93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15,163	△125,534	1,789,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 △163,139 ◦순세계잉여금 200,743 ◦기타회계전입금 △163,139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2,458	△587	31,8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세계잉여금 11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27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25
소방 특별회계	1,009,649	14,987	1,024,6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안전교부세 5,200 ◦순세계잉여금 2,752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0 ◦기타회계전입금 7,235

1)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경정

-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인 바,
 - 특별회계중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 920억 2,2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경우, '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회계가 세입과목중 순세계잉여금을 경정 요청한 것으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2,007억 4,3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1억 1,400만원), **소방특별회계**(27억 5,2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이나,
 - **교통사업특별회계**(△376억 4,4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51억 3,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838억 7,3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449억 5,4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감액조정 요청한 바,

〈표 3-7〉 순세계잉여금 경정 현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본기 예산 반영액 ①	'23회 결산 세계 잉여금 계연도 과 금 ②	추 경 증 · 청 안 감 액 ③
교통사업특별회계	108,305	70,661	△37,64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135	△213	△5,135
주택사업특별회계	199,553	115,680	△83,873
도시개발특별회계	76,321	31,367	△44,95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31	205,874	200,74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70	284	114
소 방 특 별 회 계	28,024	30,776	2,752
수도사업특별회계	46,093	123,134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3회계연도 결산서」 및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24년도 본예산에 세계잉여금을 미리 편성하여 '23회계연도 결산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76억 4,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38억 7,3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49억 5,4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추경예산안을 통해 △51억 3,5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이나,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오히려 △2억 1,300만원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
- '24년도중 추경으로 타 회계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전출 등을 통해 본예산에 이른바 '가불하여' 편성한 51억 3,500만원 뿐만 아니라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2억 1,200만원까지 추가 편성(53억

4,700만원)하거나, 실제없이 장부상 허수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51억 3,500만원)과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손분(△2억 1,200만원)까지 모두 포함한 △53억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며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가용재원인바,

- 서울시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시행령이 아닌 행정안전부 회신²⁰⁾을 근거로 해당 회계연도 결산 이후 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전년도 11월에 미리 다음년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²¹⁾와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²²⁾

■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될 경우,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재정 여력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중 지적하고 있음에도²³⁾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8개 특별회계에서 '24년도 세입예산안에 관성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은 관련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290 ('19. 8.16)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과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 회신”

2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2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24. 6), p.192~193

2)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

-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경정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중앙정부가 당초 내시액을 증·감 변경통보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5개 특별회계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증·감편성을 요청한 바,
 - ①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에 국비 26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13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1,467억 7,400만원)보다 39억 9,8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②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에 국비 31억 8,900만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에 국비 5억 5,000만원, **디지털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에 국비 2억원이 증액되어 39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③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에 국비 69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20억원)보다 69억 8,500만원 증액 편성요청(89억 8,500만원)한 것임
 - ④도시개발특별회계는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에 국비 30억원, **풍납토성 복원(보수·정비)**에 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 △1억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기정예산(1,266억 1,000만원)보다 45억 6,3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에 국비 △1,631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을 경정 요청한 것임

〈표 3-8〉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 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46,774	3,998	150,7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2,650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1,348
② 교통사업 특별회계	56,048	3,939	59,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 3,189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550 ◦디지털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200
③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0	6,985	8,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6,985
④ 도시개발 특별회계	126,610	4,563	131,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3,000 ◦풍납토성 복원(보수·정비) 1,680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116
⑤ 의료급여기 특별회계	952,715	△163,139	789,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63,139

○ 세입항목인 국고보조금등에 포함되는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²⁴⁾의 경우,

-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20억원이 추가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352억 100만원)보다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2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23. 6. 9. 타법폐지, 시행 '23. 7.10)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23. 6. 9. 제정, 시행 '23. 7.10)으로 인하여 기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의 명칭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로 변경

〈표 3-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201	2,000	37,201	◦암사역사공원 조성 2,000

-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기금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중 SH선매입은 468억 8,200만원 증액통보되고, 추가8만호(청석주차장,한누리주차장)는 △9억 4,900만원, 추가8만호,통합공공임대주택(면목행정중심복합타운)은 △48억 9,300만원이 감액통보 됨에 따라 410억 3,800만원을 증·감 편성요청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중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품과 기능 확대 지원은 2억 3,100만원, 가공배전선 지중화는 31억 800만원이 증액통보 됨에 따라 33억 3,900만원을 증·감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0〉 기금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주택사업특별회계	기금	329,477	41,038	370,515	◦추가8만호(청석주차장, 한누리주차장) △949
					◦SH선매입 46,882
					◦추가8만호,통합공공 임대주택(면목행정중심 복합타운) △4,893
도시개발특별회계	기금	6,100	3,339	9,439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품과 기능 확대 지원 231
					◦가공배전선 지중화 3,108

3)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경정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개 특별회계가 세외수입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바,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을 기정예산(5,551억 7,400만원)보다 26억 2,700만원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69억 3,200만원)를 감액조정 요청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 부담금(95억 6,000만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대해 기정예산(6,793억 8,700만원)보다 859억 1,400만원 증액요청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859억 1,400만원)를 증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3-11〉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교통사업특별회계	555,174	2,627	557,8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사용료 △6,932 ·혼잡통행료(교통관리계정) △6,932 ◦부담금 9,560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LH 부담금 5,000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LH 부담금 4,560
주택사업특별회계	679,387	85,914	765,3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임대료 85,914 ·둔촌주공 임차보증금 수입

4) 지방채에 대한 세입경정

-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25)에 따라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 발행규모 총액에 대한 변동없이 2개 세부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규모를 각각 증·감 조정 요청한 것으로
 - ①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은 지방공공자금채를 당초 1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40억원 감액발행 요청하고,
 - ②양재대로 구조개선은 지방공공자금채를 당초 20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40억원 추가발행 요청한 것임

〈표 3-12〉 지방채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도 본예산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
① 지방공공자금채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10,000	6,000	△4,000
② 지방공공자금채 (양재대로 구조개선)	20,000	24,000	4,000

5)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세입경정

-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내부거래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5조 6,748억 9,400만원)보다 1,872억 6,700만원 증·감하여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규모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

25)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 생략)

〈표 3-13〉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 (안)	주요 증감 내역
계		5,674,894	187,267	5,862,164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내부거래	729,646	20,395	750,041	◦기타회계전입금 95,995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95,995 ◦예수금수입 △75,6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75,600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825,904	207,012	1,032,917	◦기타회계전입금 190,021 ·일반회계 일반전입금(교통관리계정) 184,499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 5,513 (23년 결산, 주차장관리계정) ◦예수금수입 17,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7,000 (교통관리계정)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내부거래	113,800	△500	113,300	◦예수금수입 △5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00
주택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701,769	85,960	787,729	◦기타회계전입금 40,260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29,233 ·법정전입금(23년결산, 도정계정) 5,513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23년결산, 재촉계정) 5,513 ◦예수금수입 45,7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700
도시개발 특별회계	내부거래	1,303,197	38,593	1,341,791	◦기타회계전입금 38,593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23년 결산) 38,593
균형발전 특별회계	내부거래	76,112	△8,414	67,697	◦기타회계전입금 △8,414 ·일반회계 일반전입금 △8,41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내부거래	952,715	△163,139	789,576	◦기타회계전입금 △163,139 ·의료급여사업 시비 분담금 △163,139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내부거래	1,261	125	1,387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25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25
소방방 특별회계	내부거래	970,490	7,235	977,726	◦기타회계전입금 7,235 ·소방안전교부세 일반수요 (소방정책사업비계정) 3,421 ·일반회계전입금(인건비계정) 3,813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추경예산안의 특징

- 지난 5월 27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가 운용 중인 회계(13개)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 회계²⁶⁾의 520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것임

〈표 4-1〉 추경안을 통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세부사업 수

(단위 : 개)

구분	합계	증액조정이 요청된 사업수			감액조정이 요청된 사업수	기타 ^{주3)} 사업수	
		소계	'24년도 예산 신규편성 ^{주1)}	그 밖의 증액편성 ^{주2)}			
합계	520	436	108	328	80	4	
정책사업^{주4)}에 대한 증감요청	402	331	63	268	67	4	
시비만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업	297	251	53 ①	198 ②	46 ③	-	
국비 교부규모 변경으로 인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업	소계	105 ④	80	10	70	21	4
	국고보조금등 변경 ^{주5)}	100	79	10	69	21	-
	소방안전교부세 변경 ^{주6)}	5	1	-	1	-	4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증감요청	23 ⑤	17	-	17	6	-	
재무활동에 대한 증감요청	84 ⑥	78	45	33	6	-	
예비비에 대한 증감요청	11 ⑦	10	-	10	1	-	

- ※ 주1) 기정예산이 0인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을 통해 '24년도 예산이 신규편성 요청된 것임
- 주2) 기정예산이 존재하나, 금번 추경을 통해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이 요청된 것임
- 주3)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액의 총규모는 동일하나, 소방안전교부세를 증액조정 요청하고 그 만큼 시비를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주4)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 주5)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511-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기금(511-03) 포함]의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증·감조정이 요청된 것임
- 주6) 지방교부세(311) 중 소방안전교부세 (311-04)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증·감조정이 요청된 것임

26) 서울시는 '24년도에 일반회계(1개), 공기업특별회계(2개), 기타특별회계(10개)를 포함한 13개 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금번 추경안에 미포함된 것임

- 이 중 297개 세부사업은 시비만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안으로서 ① 53개 세부사업은 시비를 신규편성 요청하고, ② 198개 세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시비를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며, ③ 46개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사업추진 지연, 사업범위 축소 등을 사유로 시비에 대해 감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④ 시의회가 본예산을 의결('23.12.15)한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23.12.21)되어 확정·변경내시 등이 통보됨에 따라 서울시에 대한 국비 교부규모가 변경된 바, 105개 세부사업은 국비 또는 국·시비를 증·감조정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그 밖에도 ⑤ 회계연도 개시 후의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변경 등을 사유로 행정운영경비 중 23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하였으며, ⑥ '23회계연도 결산결과와 국고보조금 반환규모 등을 반영하여 재무활동 중 84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하고, ⑦ 각 회계의 재정운영규모 변동과 연동하여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경정하기 위해 11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지방재정법」 27)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28)의 경우에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③ 회계연도 중 사업의 실제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감추경을 요청한 사안(46개 세부사업)과 ④ 국비 교부규모가 변경되어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안(105개 세부사업) 그리고 ⑤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변경, ⑥ 직전회계

27)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단서 및 각호 생략)

28)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추가경정예산안)

-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은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3조에 준하여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수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편성기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⑦ 재정운영규모 변동 등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에 대해 증감조정을 요청한 사안(총 118개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칙이 정하고 있는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부합되는 사례로 사료됨

- 다만, 시비를 ① 신규편성 요청한 53개 세부사업과 ②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 요청한 198개 세부사업중 일부 사업의 경우, 첫째,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둘째, 편성요청한 사업내용이 지난 5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9)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중략)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추경을 단행”하는 것에 부합되는지 사업부서 차원에서도 재고(再考)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시의회가 삭감한 경비에 대해 복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소요예산이 금번 추경을 통해 편성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9)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24. 5.27), p.1

〈표 4-2〉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경비에 대해 복원을 요청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본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사결과			추경안 편성현황		
		예산안	감액	예산서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경제정책실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16,127	△15,467	660	660	5,558	6,218
		○ 서울영화센터 공사비(△98억 2,700만원)와 감리비(△4억 8,500만원)를 포함한 △154억 6,700만원 삭감			○ 서울영화센터 건립공사에 필요한 시설비(52억 5,900만원)와 감리비(2억 9,600만원)를 포함한 55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		
복지정책실	노인지원주택 운영	793	△400	393	393	189	583
		○ 노인지원주택 운영비 △4억원 삭감			○ 노인지원주택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1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		
도시교통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340,010	△10,000	330,010	330,010	70,000	400,010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0억원 삭감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00억원 증액편성 요청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센터 위탁 운영 지원	28,911	△142	28,768	28,768	1,765	30,534
		○ 시립목동청소년센터(△6,000만원)와 시립창동청소년센터(△1억 1,800만원), 그리고 18개 청소년센터(△9억 3,200만원)의 감면 손실보전금을 감액하고, 기타 내역에 대해 증감조정함으로써 총 △1억 4,200만원을 삭감			○ 사용료 감면 손실보전금 17억 6,500만원 증액편성 요청		
디자인정책관	편디자인 시설물 개발	1,755	△300	1,455	1,455	300	1,755
		○ 신규 편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설비 △5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내역에 대해 증감조정함으로써 총 △3억원을 삭감			○ 신규 편 디자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시설비 2억 7,600만원을 포함한 3억원 증액편성 요청		
미래한강본부	로맨틱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350	△350	-	-	450	450
		○ 행사운영비(3억 4,800만원)를 포함한 소요예산(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 행사운영비(4억 4,800만원)를 포함한 4억 5,000만원 신규편성 요청		
물순환안전국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324	△1,000	8,324	8,324	5,000	13,324
		○ 공사비 10억원 삭감			○ 공사비 부족분(50억원) 증액편성 요청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성능개선	6,280	△4,000	2,280	2,280	11,780	14,060
		○ 당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비(13억원)와 불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비(15억원) 중 △18억원 삭감 ○ 탄천우안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21억 8,000만원)과 목감천 차집관로 성능개선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13억원) 중 △22억원 삭감			○ 당현천 성능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48억원)와 불광천 성능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20억원) 증액편성 요청 ○ 탄천우안 성능개선 공사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9억 8,000만원 증액편성 요청		
물순환안전국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58,344	△1,800	56,544	56,544	5,700	62,244
		○ 공공운영비 △18억원 삭감			○ 공공운영비 57억원 증액편성 요청		

※ 자료근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23.12) 등 재구성

-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³⁰⁾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법정잉여금)과 이월예산을 차감한 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금번 추경안의 경우,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13개) 중 12개 회계에 대해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이입하기 위해 세입예산을 경정요청한 것임
 - 그러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231억 3,400만원 발생되었으나, 금번 추경안을 통해 본예산에 기 편성된 규모(460억 9,300만원)를 경정요청하지 않아 770억 4,1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되지 않은 바,
 - '24년도 중 별도의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770억 4,100만원은 '24년도 세입이 아닌 '25년도 세입으로 이입하게 되어 관련법령 위반 요인이 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0)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75~76

- 순세계잉여금(711-01)
 -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 법정잉여금(711-02)
 -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표 4-3〉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이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이입(편성) 현황			세입예산에 이입(편성)되지 않은 잔액
		본예산	증감	추경안	
일 반 회 계	932,677	-	932,677	932,677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36,698	-	36,698	36,698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70,661	108,305	△37,644	70,661	-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213	5,135	△5,135	-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15,680	199,553	△83,873	115,680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1,367	76,321	△44,954	31,367	-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205,874	5,131	200,743	205,874	-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284	170	114	284	-
소 방 특 별 회 계	30,776	28,024	2,752	30,776	-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6,094	-	6,094	6,094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937	-	937	937	-
수 도 사 업 ^{주1)} 특 별 회 계	123,134	46,093	-	46,093	77,041
공기업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92,022	-	92,022	92,022	-

※ 주1) 금번 추경안을 통해 증·감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회계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741 ('24. 6. 5)

〈표 4-4A〉 시비만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2억원 이상 신규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시 민 건 강 국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8,047	8,047
재난안전관리실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	5,100	5,100
도 시 교 통 실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	4,560	4,560
복 지 정 책 실	어 르 신 일 자 리 활 성 화	-	3,836	3,836
미래공간기획관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	-	3,800	3,800
물 순 환 안 전 국	노 후 불 량 하 수 관 로 종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00	2,00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골 목 상 권 특 화 지 원 사 업	-	1,800	1,800
재난안전관리실	한강변 자동차전용도로 줄임싹터 설치	-	1,500	1,500
재난안전관리실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	1,300	1,300
푸른도시여가국	주 요 공 원 접 근 로 개 선	-	1,078	1,078
물 순 환 안 전 국	거여동 2-7 주변 외 2개소 하 수 관 로 정 비 공 사	-	1,050	1,050
푸른도시여가국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1,010	1,010
푸른도시여가국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재조성	-	1,000	1,000
물 순 환 안 전 국	일원로 3길 87 외 2개소 하 수 관 로 개 량 공 사	-	1,000	1,000
물 순 환 안 전 국	도산대로 68길 10 외 5개소 하 수 관 로 개 량 공 사	-	900	900
물 순 환 안 전 국	대 사 관 로 70 주 변 하 수 관 로 개 량 공 사	-	860	860
물 순 환 안 전 국	올림픽로43길 하수관로 정비공사	-	815	815
물 순 환 안 전 국	방이동 먹자골목 일대 하수관로 개량공사	-	723	723
물 순 환 안 전 국	노일중학교 일대 침수 저감 사업	-	677	677
물 순 환 안 전 국	성수1가 160-1 주변외 3개소 하 수 관 로 개 량	-	600	600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4-4B〉 시비만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2억원 이상 신규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물순환안전국	동작구 관내 침수취약지역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	559	559
물순환안전국	잠실대교 남단 하수관로 정비공사	-	452	452
미래한강본부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	450	450
미래공간기획관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	-	400	400
물순환안전국	종암로 87-6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	400	400
물순환안전국	남부지방검찰청 주변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공사	-	371	371
미래공간기획관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	-	300	300
미래공간기획관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	300	300
주택정책실	휴먼타운 2.0 이자차액 보전	-	300	300
문화본부	(가칭)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	-	290	290
도시공간본부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	250	250
물순환안전국	사당역 6번 출구 일대 하수관로 개량공사	-	250	250
물순환안전국	삼성로 75길 26-7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	240	240
주택정책실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229	229
시민건강국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225	225
미래공간기획관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추진	-	220	220
물순환안전국	고덕동 562-2 외 6개소 하수박스 작업구 신설	-	210	210
도시공간본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	200	200
푸른도시여가국	달터근린공원(강남) 조성	-	200	200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4-5A〉 시비만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2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행정국	조정교부금	4,171,745	93,897	4,265,642
평생교육국	지방세전출	1,757,043	83,410	1,840,453
도시교통실	시내버스서비스개선	330,010	70,000	400,010
도시교통실	기후동행카드운영	40,100	69,684	109,784
재무국	재정보전금	1,719,754	47,709	1,767,463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6,283	22,642	38,925
도시교통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x40,558) 76,556	(x-) 20,634	(x40,558) 97,190
도시교통실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40,858	15,129	55,988
물순환안전국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10,000	14,700	24,700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98,154	14,073	212,227
재난안전관리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000	13,690	53,690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성능개선	2,280	11,780	14,06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22,800	11,375	34,175
시민건강국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13,777	11,305	25,083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13,909	11,200	25,109
여성가족정책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85,344	9,733	195,078
재난안전관리실	월드컵 대교 건설	16,000	9,657	25,657
복지정책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24,280	9,421	33,701
평생교육국	담배소비세 전출	257,277	6,570	263,847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뿐만 아니라 신규편성 요청된 사업도 제외한 것임

〈표 4-5B〉 시비만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2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주 택 정 책 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29,393	6,369	35,762
물 순 환 안 전 국	중 량 물 재 생 센 터 운 영	56,544	5,700	62,24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2,885	5,665	8,550
경 제 정 책 실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660	5,558	6,218
재난안전관리실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5,020	5,360	10,380
물 순 환 안 전 국	노 후 불 량 하 수 맨 홀 정 비	(x1,000) 7,400	(x-) 5,000	(x1,000) 12,400
물 순 환 안 전 국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324	5,000	13,324
미 래 한 강 본 부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314	4,841	7,155
도 시 교 통 실	신림선 경전철 재정 지원	12,888	4,171	17,060
균 형 발 전 본 부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5,844	4,142	9,986
문 화 본 부	서 서울 미 술 관 건 립	13,141	4,125	17,266
도 시 교 통 실	장 애 인 바 우 처 택 시 운 영	12,614	3,610	16,224
여성가족정책실	아 동 급 식 지 원	29,814	3,359	33,174
도 시 교 통 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전환사업)	20,173	2,900	23,073
미 래 한 강 본 부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1,145	2,700	3,845
미 래 한 강 본 부	암 사 초 록 길 조 성	1,500	2,600	4,100
기 후 환 경 본 부	에 코 마 일 리 지 인 센 티 브	(x300) 5,396	(x-) 2,500	(x300) 7,896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4,520	2,175	6,695
도 시 교 통 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x6,981) 31,162	(x-) 2,172	(x6,981) 33,334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뿐만 아니라 신규편성 요청된 사업도 제외한 것임

〈표 4-6〉 시비만 감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감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6,715	△6,692	22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6,484	△6,484	-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6,111	△5,641	470
시민건강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5,400	△5,400	-
재난안전관리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관리계정)	5,300	△5,300	-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6,145	△4,527	1,617
재난안전관리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12,109	△4,000	8,109
재난안전관리실	태릉~구리 IC 간 도로 확장	(x3,500) 7,000	(x-) △3,500	(x3,500) 3,500
평생교육국	지방교육세 전 출	1,811,356	△2,699	1,808,656
문화본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14,241	△2,520	11,721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3,778	△2,400	1,378
재난안전관리실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3,000	△1,800	1,200
도시교통실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 관리	6,889	△1,231	5,657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1,945	△1,200	745
재난안전관리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1,900	△1,100	800
재난안전관리실	성동교 확장	1,000	△1,000	-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4-7A〉 국비 규모 변경에 따라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주 택 정 책 실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x11,580) 16,541	(x46,882) 68,026	(x58,462) 84,567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x2,000) 2,000	(x6,985) 27,950	(x8,985) 29,950
복 지 정 책 실	자 활 근 로 사 업 지 원	(x81,243) 119,157	(x17,954) 26,333	(x99,198) 145,491
여성가족정책실	영 유아 보 육 료 지 원	(x249,488) 463,245	(x13,998) 25,975	(x263,486) 489,220
기 후 환 경 본 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저 감	(x12,767) 25,422	(x8,505) 16,960	(x21,272) 42,38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x308,175) 618,377	(x6,200) 10,552	(x314,375) 628,929
도 시 교 통 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 지원사업	(x30,871) 70,553	(x3,189) 10,339	(x34,060) 80,892
”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x1,473) 1,473	(x1,348) 9,810	(x2,821) 11,283
여성가족정책실	부 모 급 여 지 원	(x309,992) 575,207	(x4,428) 8,216	(x314,420) 583,423
도 시 교 통 실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x936) 936	(x2,650) 8,030	(x3,586) 8,966
재난안전관리실	가 공 배 전 선 지 중 화	(x-) 4,331	(x3,108) 6,337	(x3,108) 10,66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	(x7,722) 12,910	(x2,770) 4,672	(x10,493) 17,583
문 화 본 부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	(x92,118) 131,597	(x3,255) 4,650	(x95,373) 136,248
복 지 정 책 실	중 증 장 애 인 연 금	(x96,116) 162,438	(x2,642) 4,459	(x98,758) 166,897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x12,296) 24,593	(x1,882) 3,764	(x14,179) 28,358
문 화 본 부	국 가지 정 문 화 재 보 수 정 비	(x19,499) 28,733	(x2,862) 3,628	(x22,362) 32,362
시 민 건 강 국	공 공 병 원 경 영 혁 신 지 원	(x-) -	(x1,600) 3,200	(x1,600) 3,200

※ 국비(국고보조금등과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① 10억원 이상 신규편성을 요청한 사업과 ②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증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4-7B〉 국비 규모 변경에 따라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0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복지정책실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x739) 1,742	(x1,268) 2,641	(x2,008) 4,384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x2,837) 9,459	(x746) 2,488	(x3,584) 11,948
문화본부	풍납토성 복원(보수·정비)	(x5,600) 8,000	(x1,680) 2,400	(x7,280) 10,400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x19,073) 105,166	(x871) 2,293	(x19,944) 107,460
시민건강국	응급의료기관 지원	(x4,114) 5,092	(x2,353) 2,147	(x6,468) 7,239
푸른도시여가국	암사역사공원 조성	(x2,000) 4,107	(x2,000) 2,000	(x4,000) 6,107
복지정책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x2,434) 8,046	(x487) 1,693	(x2,922) 9,740
시민건강국	소아의료체계 구축(국비)	(x-) -	(x835) 1,670	(x835) 1,670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x2,411) 5,225	(x769) 1,666	(x3,180) 6,891
”	마음투자 지원사업	(x4,658) 6,988	(x1,086) 1,630	(x5,745) 8,61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료)	(x-) -	(x426) 1,420	(x426) 1,420
도시교통실	디지털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x800) 800	(x200) 1,200	(x1,000) 2,000
”	자율주행 자동차 사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x-) 1,127	(x550) 1,105	(x550) 2,232
복지정책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x2,326) 4,653	(x528) 1,057	(x2,855) 5,711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조)	(x1,094) 2,880	(x385) 1,015	(x1,479) 3,896
문화본부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 정비	(x1,741) 2,611	(x667) 1,001	(x2,408) 3,612

※ 국비(국고보조금등과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① 10억원 이상 신규편성을 요청한 사업과 ②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증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4-8〉 국비 규모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 요청한 사업현황 (1억원 이상 감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복지정책실	의료급여사업	(x952,715) 1,914,995	(x△163,139) △125,534	(x789,576) 1,789,460
주택정책실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x27,527) 27,527	(x△4,893) △4,893	(x22,633) 22,633
기후환경본부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x2,613) 2,613	(x△2,613) △2,613	(x-)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x1,162) 2,324	(x△1,049) △2,099	(x112) 225
복지정책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x56,927) 83,493	(x△1,300) △1,906	(x55,627) 81,586
"	장애수당 - 기초	(x18,812) 31,997	(x△626) △1,068	(x18,186) 30,928
주택정책실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x2,395) 3,211	(x△949) △949	(x1,445) 2,262
복지정책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x37,608) 56,579	(x△613) △911	(x36,995) 55,667
문화본부	한양도성 보수·정비	(x898) 1,283	(x△348) △498	(x549) 785
시민건강국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x150) 300	(x△150) △300	(x-) -
여성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x1,921) 6,405	(x△75) △253	(x1,845) 6,151
문화본부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x1,133) 1,619	(x△116) △167	(x1,016) 1,452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x95) 158	(x△95) △158	(x-)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x105) 175	(x△77) △128	(x27) 46
복지정책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x576) 868	(x△109) △116	(x466) 751

※ 국비(국고보조금등과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교부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이상 감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한 것임

〈표 4-9〉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증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52,615	23,254	875,87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기본경비	386	12	39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293	8	301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기본경비	793	7	80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기본경비	600	6	606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기본경비	130	5	135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기본경비	273	4	278
미래청년기획단 (미래청년기획단)	기본경비	133	4	138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기본경비	619	4	623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기본경비	223	4	227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기본경비	229	4	234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기본경비	1,459	2	1,461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담당관)	기본경비	242	2	24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321	1	32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120	1	121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기본경비	1,543	-주1)	1,544
시립미술관 (총무과)	기본경비	2,145	-주1)	2,145

※ 행정운영경비가 증액편성 요청된 전체 현황을 정리한 것임

주1) 기정예산 대비 60만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이나,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된 것임

〈표 4-10A〉 재무활동에 대한 증액편성 요청현황 (5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순세계잉여금)	-	308,327	308,327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60,174	184,499	244,673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전출금	196,146	95,995	292,14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국고보조금 반환	46,490	46,118	92,608
주택정책실 (재정비축진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재촉)	210,700	42,100	252,800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301,527	38,593	1,340,12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국민계정)	-	29,233	29,233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6,900	19,700	36,60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	-	17,214	17,214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주차장관리계정)	205,900	17,000	222,900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	1	15,278	15,279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	970,490	7,235	977,726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96,567	5,513	402,08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정계정)	185,932	5,513	191,445
주택정책실 (재정비축진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촉계정)	185,932	5,513	191,445

※ 재무활동에 대해 ① 5억원 이상 신규편성을 요청하거나 ② 기정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증액편성을 요청한 현황이 포함된 것임

〈표 4-10B〉 재무활동에 대한 증액편성 요청현황 (5억원 이상 증액편성)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187	4,493	4,68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523,000	4,000	527,00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국고보조금 반환	50	3,889	3,939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국고보조금 반납(도로계획과)	-	3,730	3,73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국민)	152	3,385	3,537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국고보조금 반환	332	2,704	3,036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	2,207	2,20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	1,371	1,37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국고보조금 반환	16	1,177	1,19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6,198	1,070	7,268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국고보조금 반환	1,060	975	2,035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6,300	900	7,20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	845	845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국고보조금 반환	-	817	817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	609	551	1,161

※ 재무활동에 대해 ① 5억원 이상 신규편성을 요청하거나 ② 기정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증액편성을 요청한 현황이 포함된 것임

〈표 4-11〉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감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기 본 경 비	97	△10	86
주 택 정 책 실 (건 축 기 획 과)	기 본 경 비	74	△6	68
균 형 발 전 본 부 (균형발전정책과)	기 본 경 비	330	△2	327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기 본 경 비	39	△2	36
기 획 조 정 실 (기 획 담 당 관)	기 본 경 비	383	△2	38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기 본 경 비	331	△1	330

※ 행정운영경비가 감액편성 요청된 전체 현황을 정리한 것임

〈표 4-12〉 재무활동에 대한 감액편성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복 지 정 책 실 (복 지 정 책 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952,715	△163,139	789,576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도시개발)	348,300	△57,900	290,400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전 출	76,112	△8,414	67,697
물 순 환 안 전 국 (물 재 생 시 설 과)	국 고 보 조 금 반 환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2,000	△540	1,459
문 화 본 부 (문 화 재 관 리 과)	풍납토성 복원 지방채 이자상환	(x881) 1,259	(x△255) △364	(x626) 89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국 고 보 조 금 반 환	2	-주1)	1

※ 재무활동이 감액편성 요청된 전체 현황을 정리한 것임

주1) 기정예산 대비 △70만 8,000원 감액편성을 요청한 것이나,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된 것임

〈표 4-13〉 예비비에 대한 증·감조정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회계)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기 획 조 정 실 (일 반 회 계)	예 비 비 (일 반 회 계)	100,550	11,171	111,721
기 획 조 정 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 비 비 (도 시 개 발)	5,055	878	5,934
기 획 조 정 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 비 비 (균 형 발 전)	877	110	987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특별회계)	예 비 비	1,705	57	1,763
도 시 교 통 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 비 비 (교 통 관 리 계 정)	762	729	1,492
도 시 교 통 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 비 비 (주 차 장 관 리 계 정)	704	14	719
도 시 교 통 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50	111	862
주 택 정 책 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34	36	71
주 택 정 책 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 비 비 (도 정)	884	73	958
주 택 정 책 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 비 비 (재 촉)	997	28	1,026
물 순 환 안 전 국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22	△46	275

※ 예비비에 대해 증·감조정이 요청된 전체 현황을 정리한 것임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서울시가 제출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³¹⁾은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결('23년 12월 15일)된 예산총칙중 세입·세출예산총액(제1조)과 일반회계 예비비(제7조)를 수정요청한 것으로,
 -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총칙중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과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를 연동하여 경정하려는 것임
- 예산총칙중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의 경우에는 당초 45조 7,405억 1,700만원을 47조 2,990억 8,3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 추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45조 7,880억 5,200만원)³²⁾보다 1조 5,110억 3,100만원 증액된 47조 2,990억 8,300만원으로 편성요청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총액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추정안을 통해 기 편성된 세출사업의 규모를 경정함에 따라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도 경정요청한 바,
 -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①일반예비비 805억 5,000만원과 ②목적예비비 200억원을 포함한 1,005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을 확정하였으나, ①일반예비비를 당초(805억 5,000만원)보다 111억 7,100만원 증액된 917억 2,1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31)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예비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데 있어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됨

※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2) 기정예산(45조 7,880억 5,200만원) = 당초 본예산(45조 7,405억 1,700만원) + 간주처리(475억 3,500만원)

〈표 4-14〉 예산총칙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본 예산	증 감 액	제 1 회 추 경 안
일 반 회 계 예 비 비	100,550	11,171	111,721
① 일 반 예 비 비	80,550	11,171	91,721
② 목 적 예 비 비	20,000	-	20,000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등³³⁾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는 편성한도가 없으나, 일반예비비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제출된 추경안의 예산총칙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917억 2,100만원)는 일반회계 예산총액(34조 2,052억 4,000만원)의 0.2%에 해당되어 관련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요청된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추경안에 편성요청된 일반회계 예비비(1,117억 2,100만원)³⁴⁾는 '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1,005억 5,000만원)보다 11.1%, 111억 7,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33)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139

○ 일반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34) 일반예비비 917억 2,100만원, 목적예비비 200억원

-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액(34조 2,052억 4,000만원)이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33조 617억 6,200만원) 대비 3.4%, 1조 1,434억 7,8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증액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흑서기 폭염, 가뭄, 그리고 동절기 한파 등으로 예비비 지출수요를 예측하는데 한계는 있으나 '23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 1,250억원중 지출결정되지 않은 732억 8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례가 있는 바, 예비비 편성액은 다른 세출예산처럼 이용·전용·변경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물론 이월이 불가하여 과다편성은 불용으로 직결될 수 있어 준비재원이라 할 수 있는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편성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채발행 및 차입금(제4조)의 경우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세부사업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에서 발행계획한 지방공공 자금채 △40억원을 감액하고, **양재대로 구조개선**에 대한 지방공공 자금채를 40억원 추가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의 변동이 없어, 예산총칙 제4조는 별도의 경정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표 4-15〉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세 부 내 역	본 예산	증 액	감 액	추경(안)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96,800	4,000	△4,000	96,800
정 부 자 금 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6,800	-	-	6,800
지방공공자 금 채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10,000	-	△4,000	6,000
지방공공자 금 채	양 재 대 로 구 조 개 선	20,000	4,000	-	24,000
지방공공자 금 채	신 림 ~ 봉 천 터 널 건 설	10,000	-	-	10,000
모집공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30,000	-	-	30,000
모집공채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20,000	-	-	20,000

3. 법정경비 등의 정산

- 「지방회계법」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³⁵⁾
- 서울특별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해 ① 지방세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정산금,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③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에 대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④지역자원시설세중 특정 부동산 증수분에 대한 전출금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산하고 있음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9,326억 7,600만원)에 대해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1,416억 700만원)³⁶⁾,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872억 8,100만원)³⁷⁾, ③타회계 전출(551억 3,400만원)³⁸⁾ 등을 포함한 법정 의무경비 2,840억 2,200만원을 정산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으나, ④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319억 9,800만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35)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36) 자치구 교부(1,416억 700만원)

- ① 조정교부금교부(938억 9,700만원)
- ② 재정보전금교부(477억 900만원)

37) 교육청전출금(872억 8,100만원)

- ① 지방세전출(834억 1,000만원)
- ② 담배소비세전출(65억 7,000만원)
- ③ 지방교육세전출(△26억 9,900만원)

38) 타회계 전출(551억 3,400만원)

- ①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385억 9,300만원)
- ②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촉계정(55억 1,300만원)
- ③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55억 1,300만원)
- ④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55억 1,300만원)

- 아울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³⁹⁾는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9,326억 7,600만원에서 법정정산분(3,160억 2,100만원)을 차감한 가용재원은 6,166억 5,500만원으로 법정의무경비 정산후 잔액의 50%에 해당하는 3,083억 2,7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음⁴⁰⁾
- 다만, 법정의무경비(3,160억 2,100만원)중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319억 9,800만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요청 하지 않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3,083억 2,700만원)후 남게되는 여유재원 3,403억 2,600만원⁴¹⁾을 금번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39)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이하생략)

40)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160

41) 법정의무경비(3,160억 2,100만원)중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319억 9,800만원)을 미편성하고 추경예산의 가용재원(3,403억 2,600만원)에 포함시킴

〈표 4-16〉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액	비고
계		932,676	
법 정 의 무 경 비 계		284,022	
자 치 구 정 산 금	소 계	141,607	
	조 정 교 부 금	93,897	보통세 × 22.6% + 레저세 장외발매분 × 20%
	재 정 보 전 금	47,709	특별시분 재산세 × 100%
교 육 청 전 출 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소 계	87,281	
	지 방 세 전 출	83,410	보통세(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 업원분, 재산세 제외) × 10.0%
	담배소비세전출	6,570	담배소비세의 45.0%
	지방교육세전출	△2,699	지방교육세의 100% (’23회계연도 정산분)
타 회 계 전 출 (교육비특별회계전출 제외)	소 계	55,134	
	도시개발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38,593	’23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액 551억 3,400만원 중 70%에 대한 부족분 추경반영
	주택사업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11,026	’23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액 551억 3,400만원 중 20%에 대한 부족분 추경반영
	교통사업특별회계 법 정 전 출 금	5,513	’23회계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액 551억 3,400만원 중 10%에 대한 부족분 추경반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308,327	순세계잉여금중 법정의무경비 정산후 잔액의 50.0%
여 유 재 원		340,326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 미편성에 따라 가용재원(319억 9,800만원) 증가

4.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여성가족정책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101)

- 동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구립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인건비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26
민 간 위 탁 금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임금 인건비 부족분 32,031,000원*4개소 ◦ 시립시설 임차료 347,000원*6개월 				128 2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96
◦ 단일임금 인건비 부족분 32,224,000원*3개소				96

- 증액편성한 민간위탁금중 시립시설 임차료(200만원)를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⁴²⁾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시립시설 임차료(200만원)는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2)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12

□ 서울시와 함께하는 나만의 결혼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105)

- 동 사업은 공공 예식장을 발굴하고 맞춤형 결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민간위탁금(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1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55				
민	간	위	탁	금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식 사업 총괄 인건비 13,800,000원×1명 ◦ 비품업체 선정 및 회의비 1,600,000원×2회 ◦ 공공예식장 비품대여비 및 관리비 1,000,000원×100건 ◦ 홍보운영비 8,000,000원 		13 3 100 8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예식장 인근 식당 생중계 시스템 3,000,000원×10개소 					30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⁴³⁾ 소요예산중 민간위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200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6. 임차료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 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청소비 등 실비지급) 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다.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라.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이하 생략)

4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탁금을 신규편성할 경우와 다른 위탁사무를 추가하는 등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의 「2024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⁴⁴⁾에도 민간위탁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및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
- 해당 부서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가 지난 '21년 7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현 서울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시 동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의결한 것으로 인지하여 사업별설명서에 '21년 7월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료되나
- 지난 '21년 7월 의결⁴⁵⁾할 당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되는 공공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신규 사업까지 미리 예상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예측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추가하는 것은 중요내용의 변경에 해당될 수 밖에 없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 5. 생략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4)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3. 7), p.59

■ 민간위탁 의회동의 및 보고

○ 동의대상 : 1) 신규 위탁사무 2) 재위탁 사무 3)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사무 4)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심사시기 : 예산편성 전

45) 「서울특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① 의안번호: 2419 ② 회부일: 2021. 5.31 ③의결일: 2021. 7. 2

- 아울러 동 사업의 방침서에 따르면⁴⁶⁾ 민간위탁금중 1억원은 공공예식장에서 시행되는 예식 1건당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100건)하기 위하여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은⁴⁷⁾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2024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의⁴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조금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위탁사업은 시 직접 추진 사업(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결혼식 전문운영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예식공간 설치비용 일부(1건당 10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동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훈령과 서울시 「2024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이 준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6) 서울시, 가족문화담당관-8621('24. 5.27)

47)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3. 7), p.126

48)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3. 7), p.49

○ 민간위탁금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와 의회동의를 거친 후 예산편성 요구
- 민간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경비가 절감되거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 법령 및 조례 등에 명확한 위탁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예산 요구
- 소규모 용역제공, 조사평가 관련 일반 용역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직접 추진 사업으로 예산 요구
- 실질적으로 보조금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위탁사업은 시 직접 추진 사업(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

〈표 4-19〉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확대 운영 계획

사	업	내	용
<p>① 공공예식장 이용비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용) 공공예식장 예식 1건당 운영비 지원(100만원) - 결혼식 전문운영업체 공모 선정하여 예식공간 설치비 중 일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 설치비 : 실속159만원 ~ 고급171만원(의자, 테이블, 파라솔 등) ◦ (추진체계) 市 가족센터에서 운영업체 선정·관리 및 지급 			
서울시	서울시 가족센터	운영업체(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총괄 ◦ 예산 교부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업체 선정 및 관리 ◦ 업체별 운영비 집행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 공간 연출 ◦ 예식 후 운영비 청구 (→ 시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 100백만원(100만원×100건) 			

※ 자료근거 : 서울시, 가족문화담당관-8621('24. 5.27)

○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4조는⁴⁹⁾ 서울시가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례 제4조의7을⁵⁰⁾ 통해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⁵¹⁾

- 대관료 감면 이외에 공공예식장에서 시행되는 예식 1건당 운영비(100만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동 사업 내용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예식 1건당 100만원을 우회적으로 지원(보조)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보다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① 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
2. 이하 생략

5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과 감면의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5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① 의안번호: 1749 ② 회부일: 2024. 4. 8 ③ 의결일: 2024. 4.26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별설명서 p.112)

- 동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통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정예산(39억 1,500만원)보다 5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당초 '24년도 본예산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정에 대해
 - 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통비**를 분기⁵²⁾별로 10만 8,000원씩 지원하기 위해 38억 4,500만원을 편성하고, ②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지원 하기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정에 대해 '재학 중인 자녀'뿐만 아니라 '학교 밖 자녀'의 **교통비**까지 지원하기로 사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⁵³⁾

〈표 4-2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3,915	552	4,468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915	552	4,468	○ 교통비(552,960천원) = 1,280명(한부모가족 가녀 증가수) × 552 108,000원(분기별 교통비) × 4분기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4. 5), p.112

②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13

52) 동 사업은 학사일정이 시작되는 3월부터 기산하여 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1분기, ②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2분기, ③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3분기, ④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4분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① 3월 20일, ② 6월 20일, ③ 9월 20일, ④ 12월 20일에 각 분기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2930('24. 2.16)

53) ①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714~717

②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8014('24. 5.13) “2024년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추진 및 추경 계획”

③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12~113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등⁵⁴⁾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제도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기 위해 '24년 5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24. 5. 9)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된 시점 이후부터인 2~4분기까지, 3개 분기 사업비 증가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되기 이전인 1분기까지 포함한 총 4개 분기에 대한 사업비 증가분을 편성요청 하는 것으로,
-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24. 5. 9)되기 이전인 '24년도 1분기부터 이미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한 사례로 확인됨⁵⁵⁾

54)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략)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4. 1), p.4, p.40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13. 1.27 시행, '12. 1.26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지자체사업 협의이행 확인) 지자체 예산편성 또는 조례제정 단계에서 협의·조정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시행 전 원활한 협의 절차 이행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3. 7), p.366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3. 7), p.60

55) ①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2930 ('24. 2.16) “2024년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Ⅱ. 주요 변경사항

■ 교통비

구분	기존	변경('24. 1~)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의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

②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8014 ('24. 5.13) “2024년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추진 및 추경 계획”

Ⅱ.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24. 1~)
지원기준 완화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

구분	기존	변경('24. 1~)
지원대상 확대	중·고등학생 자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 → 재학 중 + 학교 밖 자녀

※ 제도를 변경한 시점은 '24년 1월이지만,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교통비가 실제 지급된 것은 '24년 3월로 확인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로서 협의완료 후 제도변경 및 시행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사업부서로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수개월이 지난 5월 협의가 완료되어 부득이하게 선조치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도시행의 취지를 고려하면 동 사업에 대한 선제적 예산지원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라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동 사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의 협의를 완료하기 이전인 1분기까지 포함시켜 총 4분기 사업비 증가분을 편성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부서의 제한적인 자료협조로 사실관계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기에 향후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별설명서, p.135)

- 동 사업은 범죄 피해자 및 범죄피해우려자에게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을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12억원이 포함된 1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당초 '24년도 본예산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여성 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추가 공급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소관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1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202	
사	무	관	리	비	1,200
	◦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 40,000원*30,000개			1,200	
공	공	운	영	비	2
	◦ 안심이 시스템 공공요금(문자발송) 20원*144,800건			2	

○ 동 사업은 추진근거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로 하고 있는 바,⁵⁶⁾

- 각 실·본부·국 행정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여성가족정책실의 1인가구담당관은 “① 1인가구 대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개발, ③ 각 실·본부·국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④ 1인가구 대책 자문단 구성 운영, ⑤ 1인가구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⁵⁷⁾

- 1인가구에 대해서도 범죄 피해자 및 범죄피해우려자에게 휴대용 안심벨(헬프미)을 지원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를 고려하면 안심벨 지원사업은 1인가구담당

56)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5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①~⑧ 생략

⑨ 1인가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인가구 대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개발
3. 각 실·본부·국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4. 1인가구 대책 자문단 구성 운영
5. 1인가구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관의 사무범위를 관련 시행규칙보다 확대적용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안심벨(헬프미)을 범죄 피해자 및 범죄피해우려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사업 방침서⁵⁸⁾에는 일부 물량은 굿즈 판매처인 서울디자인재단을 통해 유료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6조⁵⁹⁾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으로 ①범죄피해자, ②범죄피해 우려자, ③사회안전약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 사무관리비⁶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이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이외의 민간인에게 유료판매하는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까지 사무관리비로 제작하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지출사례로 판단됨

58)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3353('24. 3.14),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지원계획”

59)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0) 사무관리비의 주요내용

① 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② 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량비

③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로 등

④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⑤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⑥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⑦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⑧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⑨ 범용S/W구입비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이외에도 동 사업은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에서 사무관리비(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 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⁶¹⁾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소관 신규사업내용(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안심벨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요청한 것임

- 사업부서(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안전지원팀)는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안심벨 업무만 “이관”받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로 8억원을 지출한 것이라 하나,

- 특정 사업에 한정된 “업무이관”은 결국 “예산이체”의 한 가지 유형일 뿐이며 자금의 지출·관리·계약 일체는 이체받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⁶²⁾ 사업부서(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안전지원팀)는 재무과장에게 계약의뢰하며 예산편성부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임을 기재하고 있어⁶³⁾ 예산의 이체가 이루어진 상태로 사료되지 않음
- 더욱이 예산의 이체는 사업부서의 예산이체요구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정하고⁶⁴⁾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⁶⁵⁾에 따라 지난 4월 2일, '24년도 1분기 예산이체 내역을 제출한 바 있고,⁶⁶⁾ 서울특별시의회로 수신된 공문에는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

61)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4914('24. 4.23),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구매계약(품의등록)”

62)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79~180

63) ① 서울특별시, 1인가구담당관-4913 ('24. 4.23),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구매계약 우선협상대상자 협상결과 알림 및 계약 의뢰”

② 서울특별시, 1인가구담당관-4914 ('24. 4.23),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구매계약(품의등록)”

64)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76

65)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으로 이체된 내역이나 안심벨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이체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안전지원팀)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에서 안심벨과 관련하여 8억원을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한 “이체”를 통한 예산지출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음⁶⁷⁾
- 사업부서의 회신에 의하면, “휴대용 안심벨 지원사업은 추진부서가 변경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담당 사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사무이관 방침없이 1인가구담당관에서 휴대용 안심벨 지원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
- 타 실·본부·국의 예산을 지출한 동 사례는 실·본부·국이 상이한 다른 정책사업의 예산을 “이관, 지원, 협조” 등으로 이른바 ‘실무차원의 예산집행방식을 개발하여 지출’한 것으로 관련법의 허용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회계질서를 경시한 행위로써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근거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기만한 결과로 판단됨
- 더욱이 지난 6월11일, 사업부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타부서 예산 사용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지출품의시 자치경찰협력과 담당 팀장의 협조결재를 득하여 품의”한 것으로 회신 한 바,
- 사업부서의 의견에 적극 수긍하여 업무조정만으로 실·본부·국은 물론 정책사업까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⁶⁸⁾에는 실·본부·국장간 업무 조정은 부시장

66)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375 ('24. 4. 2), “2024회계연도 1분기 예산 이체 및 전용 내역 제출”

67) 서울특별시, 1인가구담당관-6359 ('24. 6.11)

68)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본부·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시장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 운영목표 설정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부시장 결재를 받은 방침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규칙중 팀장의 전결사항에 대해 실·본부·국을 넘어서까지 예산지출을 용인하는 결정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팀장협조로 예산지출을 품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타 실·본부·국의 예산을 지출한 동 사례의 경우, 사업부서가 회신한 바와 같이 ①이체 대상이 아니며 ②「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담당 사무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 사무이관 방침이 없고, ③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타 부서 예산을 사용하되 ④지출품의시 자치경찰협력과 담당 팀장의 협조결재를 득하여 예산지출을 품의한 것이라고 반론하여도 결론적으로는 회계질서를 경시한 행위는 물론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기만한 행위로 판단됨
- 회계질서를 경시한 동 행위가 용인된다면 향후 서울시는 필요하다면 수시로 사업주관부서가 “실무차원의 이관, 지원, 협조”라는 자의적 적용을 통해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의도하는 모든 사업에 걸림돌 없이 예산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단초를 남기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타 실·본부·국의 예산을 지출한 동 사례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증액편성 취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 전액은 삭감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49조69)에 따라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요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실·본부·국장간 업무 조정

3~5. (생략)

6. 팀장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69)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하 생략)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사업별설명서 p.166)

○ 동 사업은 골목상권 환경개선을 통한 유동인구확대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 여건을 마련하고자 공모를 통해 6개 자치구를 선정하기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8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부서의 방침(70)을 검토하면, 동 사업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자치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하여 화장실, 키오스크 등 편의시설과 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는 것임

〈표 4-22〉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1,800	1,800	
자치단체 자본보조	-	1,800	1,800	○ 6개 자치구 x 3억원 1,8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67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는 이미 전통시장의 화장실, 조명, 통행로 등을 개선하는 ①**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사업)**(71)과 ②**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72)사업을 통해 전기, 소방 등 안전취약시설물을 보수하고 있고
- 서울시의 「2024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73)

7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5647 ('24. 5.21), “골목상권 특화지원사업 추진계획”

71) 노동공정상생담당관,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23.11), p.17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사업)** 예산액 : 138억 2,200만원

72) 노동공정상생담당관,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23.11), p.175

※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예산액 : 5억 7,000만원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이 서울시의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른 유사·중복 사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특히,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지원하려는 것이나, 전통시장의 노후전선정비와 화재알림시설 지원의 경우 대상지를 미리 확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이후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추경안처럼 향후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의 사업방식과 차이가 있어 사업대상을 골목상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부서는 6개 자치구를 선정하고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⁷⁴⁾ 동 사업에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소요예산은 편성요청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는 바,
- 기 편성된 기본경비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나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조직별 경비로 한정하고 있어,⁷⁵⁾ 편의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기보다는 절차에 따라 동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73)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3. 7), p.98

- (신규사업)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연도와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단 전년도 사업에서 통폐합 등의 이유로 만들어지는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업구조화 전, 예산담당관과 협의

7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5647 ('24. 5.21), “골목상권 특화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선정위원회	사업시행	결과보고
서울시	자치구→서울시	내외부 전문가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② 선정위원회 심사 : '24. 7월 ※ 별도 계획 수립 및 운영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등
- 평가방법 : 시 선정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6명 이내 구성) 심사

75)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3. 7), p.167

II. 우리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편성기준

6. 기본경비

① 공통경비

- ① 부서의 운영을 위해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각 부서별 정원, 조직규모, 장비수 등에 따라 기준단가를 적용 산정

② 조직별 경비

- ① 부서별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서 한도액 범위내 각 부서가 부서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경상경비

3) 미래청년기획단

□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사업별설명서 p.278)

- 동 사업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선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⁷⁶⁾으로 부채가 있는 청년층에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 본예산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요청한 것임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청년동행센터를 통해 비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1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표 4-23〉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190	△190	-	
사무관리비	10	△10	-	○ 부채 특화 교육 미운영 (비예산 추진) △10
기타보상금	180	△180	-	○ 부채 특화 상담 (비예산 추진) △18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278

-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며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업중 유사사업이 있음을 지적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⁷⁷⁾

76)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
 - 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당시 사업부서는 ①청년들이 직접 선정한 청년자율예산이고, ②부채상속 등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 청년에게 부채상환 특화 상담을 하는 것으로 영테크사업과 중복사업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1억 9,000만원을 승인한 바 있음
- 시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사하며 유사·중복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재원확보를 우선시하여 단 1원도 조정하지 않았으나, 실제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는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한정된 세출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야기한 사례로 사료되어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경제정책실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p.327)

- 동 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⁷⁸⁾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과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정예산(15억원)보다 10억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공 기관 등에 대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2,500	1,500	1,000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액 500개사* 2,000,000원			1,000	1,500	1,000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⁷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2024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⁸⁰⁾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78)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자)에 물품 혹은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임

79)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협의를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0)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3. 7), p.60

- 동 사업 내용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2년 3월에 중소기업 사전협의를 이행한 바 있음⁸¹⁾

○ 그러나 추경을 통해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을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기업에서 50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이미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 또한 기업별 200만원 한도에서 500만원 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 금번 추경으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현재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4-25〉 기간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22년 5월~'23년 5월	'23년 8월~'23년 12월	'24년 2월~'24년 12월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제외 업종(숙박, 주류업 등)지원 불가
매출채권보험가입시 보험료 50% 지원 (기업별 200만원 한도)	매출채권보험가입시 보험료 50% 지원 (기업별 500만원 한도)	매출채권보험가입시 보험료 50% 지원 (기업별 500만원 한도)
중소기업 사전협의를 이행 ('22년 3월)	중 소 기 업 사 전 협 의 미 이 행	

-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⁸²⁾은 중앙 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사

81)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2932('22. 3.14),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검토결과 송부”

82)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3. 7), p.366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업 사전 협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동 소요예산의 경우, 사업의 긴급성과는 별개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한 후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승인 요청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방침서에⁸³⁾ 따르면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를⁸⁴⁾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서울특별시장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다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가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별설명서 p.345)

- 동 사업은 중구에 영상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6억 6,000만원을 편성된 것이나, **시설비 52억 5,900만원**이 포함된 55억 5,8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23년 10월,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⁸⁵⁾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건물의 소유(서울시)와 토지의 소유(중구)가 이원화 됨을 사유로 안전에서 삭제한 바,⁸⁶⁾

83) 서울시, 경제정책과-1726('24. 2.14), “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계획”

8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5)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01418, 제출 '23.10.16)

86)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01418, 제출 '23.10.16)
의결결과 : 수정가결

- ⑫ 서울영화센터 건립(변경) 건 등 2건 삭제

〈표 4-26〉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660	5,558	6,218	
시설비	523	5,259	5,782	○ 도급공사비 3,160 ○ 관급자재 구입 2,019 ○ 폐기물처리용역 등 25 ○ 설계의도구현용역 54
감리비	137	296	433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296
시설부대비	-	2	2	○ 공사 관련 부대비 등 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345

-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삭제를 사유로 공사현장 관리비용(6억 6,000만원)⁸⁷⁾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대로 의결한 바 있음
- 서울시가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⁸⁸⁾을 제출함에 따라 6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소요예산의 편성 여부가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의결결과
: 원안가결('24. 6.14)

87) 공사현장 관리비용 6억 6,046만 1,000만원은

시설비 5억 2,319만 4,000원, 감리비 1억 3,726만 7,000원임

88)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01910, 제출 '24. 5.27)

□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별설명서 p.350)

- 동 사업은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 프로젝트”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에 선정되어⁸⁹⁾ 서울경제진흥원(SBA)으로 국가직접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⁹⁰⁾에 따른 운영비를 매칭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7〉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조 정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150	15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150	150	○ 레전드 50+ 지역특화 프로젝트 운영비 15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350

89)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1511 ('23.10.26),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선정평가 결과 통보”

순 번	프 로젝트 명	지원대상 여부
1	서울 도시제조업 재도약 프로젝트	○
2	서울 캠퍼스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X

9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264 ('24. 2. 6), “2024년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사업 수행과제 협약체결 협조 요청”

※ 주요 협약 내용

■ [별지 제2호] 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 협약서

- 협약 대상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대행 중소기업정보진흥 원장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주관기관 : (재)서울경제진흥원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② 지자체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지방비의 지급 (후략)

■ [첨부 제5호] 지자체 현금납입 협약서

사 업 명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사업		
과 제 명	서울 지역혁신생태계 구축(도시제조업)		
주관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총괄책임자	안○○
총수행기간	'24. 1. 1 ~ 12. 31	당해연도 수행기간	'24. 1. 1 ~ 12. 31
당해연도 지자체부담금(원)	150,000,000	지자체부담금 입금확약일	추경으로 확보 예정

○ 현행 「지방자치법」 제47조(91)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규제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92)에도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과 삼자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더욱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는 협약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도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⁹³⁾

91)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2)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후략)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93)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후략)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이미 지난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등의 경우,⁹⁴⁾ 재정적 의무부담과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

■ 금번 정례회에도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⁹⁵⁾

○ 따라서 동 소요예산의 경우에는 지난 2월 1일,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제323회 임시회 및 금번 제324회 정례회에도 동 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과 조례로 정한 절차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94) ■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01448, 제출 '23.10.16) (원안가결)
■ 「수도권광역금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왕십리역 신설 협약 추진 동의안」 (의안번호 01447, 제출 '23.10.16) (원안가결)
■ 「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 (의안번호 01446, 제출 '23.10.16) (원안가결)

95)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01936, 제출 '24. 5.27) (환경수자원위원회 회부 '24. 5.30)

5) 복지정책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사업별설명서 p.390)

- 동 사업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⁹⁶⁾하는 참여가구에 대해 매월 안심소득⁹⁷⁾을 시범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됨에 따라 기정예산(150억원)보다 15억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표 4-28〉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15,000	1,500	16,500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5,000	1,500	16,500	○ 안심소득 지원집단 급여 지급액 증가 : 15억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391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⁹⁸⁾에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업별설명서 중 “증감사유”를 검토하면 당초 '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① '22년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⁹⁹⁾의 4인가구 인상률(5.5%)을 일괄 적용하였으며, ② 소요예산 산출을 위한

96)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

97)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

98)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기관은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3조에 준하여 예산편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수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편성기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9)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2. 8. 8 제정, '23. 1. 1 시행)

기준액을 과소 추계하고 ③ 오류가 있는 계산식을 적용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편성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금번 추경안에는 ① '23년 8월 고시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¹⁰⁰⁾의 인상률을 반영하되 안심소득 참여가구 중 4인가구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4인가구 인상률(6.1%)을 단순 적용하기 보다는 가중평균된 인상률(6.72%)을 적용하고, ② 과소추계된 기준액을 정정하였으며, ③ 오류를 바로잡은 계산식을 적용함에 따라 소요예산(15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동 사업은 '24년도 본예산 성립('23.12) 후 참여가구¹⁰¹⁾ 증가 등으로 인해 지급액 규모가 증가된 사안이 아니며, 본예산 편성 당시에 중앙정부가 이미 고시('23. 8)한 내용을 사업부서가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과소추계된 기준액 등을 적용함에 따라 처음부터 부족편성된 소요 예산을 금번 추경을 통해 사후적으로 경정요청 하는 사안으로,
- 서울시가 규칙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사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부합되지 않는 편성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21년 11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¹⁰²⁾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행한 사안으로,

10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3. 8.16 제정, '24. 1. 1 시행)

■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22만 8,445원 (직전년도보다 7.2%, 15만 553원 인상)
- 2인가구 : 368만 2,609원 (직전년도보다 6.6%, 22만 6,454원 인상)
- 3인가구 : 471만 4,657원 (직전년도보다 6.3%, 27만 9,841원 인상)
- 4인가구 : 572만 9,913원 (직전년도보다 6.1%, 32만 8,949원 인상)
- 5인가구 : 669만 5,735원 (직전년도보다 5.8%, 36만 5,047원 인상)
- 6인가구 : 761만 8,369원 (직전년도보다 5.4%, 39만 388원 인상)
- 7인가구 : 851만 4,994원 (직전년도보다 5.0%, 40만 7,479원 인상)

101) 동 사업의 참여가구는 1,584가구(1단계 484가구, 2단계 1,100가구)로서 본예산 편성 당시와 동일함

① 서울특별시(복지정책실),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169

②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392

- 우리 시의회는 '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동 사업의 “전달체계”가 기존에 서울시의 출연기관(복지재단)을 통해 수행되던 방식에서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법령과 지침¹⁰³⁾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별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¹⁰⁴⁾ 추경안 제출시점('24. 5.27)을 경과한 현재까지 해당 절차(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¹⁰⁵⁾
- 동 사안에 대해 사업부서는 복지재단에서 서울시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업무가 조정된 것’일 뿐 “전달체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 ①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복지재단을 동일시하여 복지재단에서 서울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내부의 업무조정으로 인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② 사업부서가 당초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할 당시 협의요청서 중 “전달체계”에는 서울시가 계획수립 등을 수행하고, 복지재단이 대상가구 선정,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어¹⁰⁶⁾ 기 제출한

10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03) 보건복지부,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24. 1), p.10

2. 신설·변경의 의미

○ 변경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부담 수준, 급여내용,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 예시

4) 전달체계 변경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기관, 제공기관 등의 변경

10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보고서」('23.12), p.119

105) 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390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741 ('24. 6. 5)

106) ①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18581 ('21. 7.15)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 제출 및 긴급 검토 요청”

2. 제도(사업) 개요

■ 전달체계

○ 수행기관

“전달체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 본예산 의결('23.12.15) 이후에라도 별도의 협의를 이행함으로써 절차적 타당성을 보완하기보다는 추경안 심사시점에서야 단순한 업무조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보다는 행정편의를 우선시한 결과로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시의회로부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적받았음에도 해당 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채 본예산 편성시 스스로 발생시킨 오류만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서울시가 정한 추경예산 편성사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성도 충족시키지 못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요예산(15억원)의 승인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계획수립, 예산책정 및 교부, 신청(시)

- 대상가구 선정, 시범사업 조사·모니터링, 관리(서울시복지재단)

②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18814 ('21. 7.19)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 수정 제출 및 긴급 검토 요청”

③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5613 ('21.10. 1)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 수정 제출”

※ 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당시 ① '21년 7월, 협의요청서를 당초 제출('21. 7.15)하고, ②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청 등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수정 제출('21. 7.19) 및 재수정 제출('21.10. 1)한 것임

□ 노인지원주택 운영 (사업별설명서 p.410)

- 동 사업은 당초 '24년 6월까지 추진하고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4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¹⁰⁷⁾ 기정예산(3억 9,300만원)보다 1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9〉 노인지원주택 운영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393	189	583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393	189	583	○ 노인지원주택 운영(91호) 189
				- 인건비 (6명×21,269,660원) 127
				- 커뮤니티룸 관리운영비 (4개소×8,750,000원) 35
				- 사업비 (사례관리비 91명×50,000원×6개월) 27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5), p.191~192
 ②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4. 5), p.411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단계적인 일몰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유로 소요예산(7억 9,300만원) 중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부서도 이에 대해 동의한 것이나,¹⁰⁸⁾

- 금번 추경안에는 인력을 당초 13명에서 6명으로 감축하고, 커뮤니티룸도 당초 5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하는 등 재구조화를 추진함에 따라 상반기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규모(3억 9,300만원)보다는 감소된 하반기 사업비(1억 8,9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¹⁰⁹⁾

107)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13151 ('24. 5.20) “2024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변경계획”
 108)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3.12), p.165
 109)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13151 ('24. 5.20) “2024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변경계획”

○ 다만, 증액편성 요청된 소요예산(1억 8,900만원)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¹¹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동 사업은 시의회의 예산심사 취지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판단됨

- 우리 시의회는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동 사업에 대한 일몰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유로 소요예산(7억 9,300만원) 중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부서도 이에 대해 동의한 것이나, 금번 추경안은 사업일몰을 취소하기 위해 삭감된 사업비(△4억원) 중 일부(1억 9,800만원)를 복원요청한 것으로서 의회의 심사취지와 부합되는 편성요청인지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도 준수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1억 8,900만원)를 편성요청 하기에 앞서 지난 5월 13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¹¹¹⁾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한 결과 심의를 요청한 규모(1억 8,991만 8,000원)보다 사업비를 축소하고 향후 일몰하는 것을 전제로 추경안을 편성하도록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나,¹¹²⁾
- 사업부서는 심의 당시 요청한 규모(1억 8,991만 8,000원)보다 사업비를 단 1원도 축소하지 않고 추경안을 편성요청한 것은 물론 사업일몰을 고려한 증액편성으로 사료되지 않아 증액편성 요청한 소요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110) 금번 추경안은 기정예산(45조 7,880억 5,200만원)보다 1조 5,110억 3,100만원 증액된 47조 2,990억 8,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1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112)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837 ('24. 5.16)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등 사전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노인지원주택 운영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일몰제 및 예산규모 축소 등 전제)

○ 셋째, 동 사업은 성과평가지 자체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으로 확인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¹¹³⁾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사업부서와 사업부서가 속한 실·본부·국의 자체평가를 거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있는 바,¹¹⁴⁾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3년 7월, '22회계연도에 보조사업을 추진한 성과에 대해 평가한 결과 사업부서(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라 사업부서가 속한 실·본부·국(복지정책실)의 차원에서도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사안으로,¹¹⁵⁾
- 금번 추경안을 통해 증액편성이 승인되더라도 예산규모(5억 8,300만원) 자체는 '23년도(7억 6,200만원)보다 감소된 것이나, 단순히 직전년도보다 예산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24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일몰하도록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증액편성 요청된 소요예산(1억 8,900만원)은 의회의 심사취지를 존중하지 못한 것임은 물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가 신중히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4)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7866 ('23. 7. 7)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115)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23. 7.31)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441)

- 동 사업은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38억 3,6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중 ① **사무관리비**(500만원)와 **행사운영비**(1억 7,000만원)는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어르신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며,
 - ② **자치단체경상보조금**(29억 7,600만원)은 '24년 3월,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식사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경로당 중식 5일제¹¹⁶⁾를 실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시·도별로 수립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중식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요청된 것임¹¹⁷⁾
 - 아울러 '24년 5월, 사업부서는 기존에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하여 온 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복지재단으로 편입하고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¹¹⁸⁾

116) 전국의 전체 경로당(6.8만개) 중 42%(2.8만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임 : 관계부처 합동,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24. 3.21), p.7

117) ① 관계부처 합동,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24. 3.21), p.7

②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501 ('24. 3.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 관련 영상회의 참석 요청”

③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626 ('24. 4.18) “경로당 식사 제공 관련 시도 담당자 회의 참석 요청”

④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12898 ('24. 5.16) “2024년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 지원계획”

■ 중식도우미 사업개요

○ 사업량 : 5,000개(공익활동형)

○ 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권자

○ 지원기준

- 노인일자리 중식도우미 : 1인당 활동수당 월 29만원, 부대경비 연 18만원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 1인당 2,958만원(공익활동 150명당 1명 배치)

○ 추진방법 : 자치구 지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선발, 사업 수행

○ 수행기관 : 28개소(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

118)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12828 ('24. 5.14)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 계획”

※ 기존에 운영하여 온 어르신취업지원센터가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증가되는 업무와 교육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광역단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24년 하반기 중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어르신일자리 지원 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③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2억 4,000만원)의 경우, '24년 7월부터 8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비품을 구입함으로써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요청된 것이며,
- ④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4억 4,500만원)의 경우, '24년 9월 개소 예정인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편성요청된 것임¹¹⁹⁾

〈표 4-30〉 어르신일자리 활성화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3,836	3,836	
사 무 관 리 비	-	5	5	○ 어르신일자리박람회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5
행 사 운 영 비	-	170	170	○ 어르신일자리박람회 운영 17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	2,976	2,976	○ 어르신일자리사업 운영(중식도우미) 2,976
				- 중식도우미 활동비(공익활동 일자리) 2,808
				- 중식도우미 관리인력 인건비 164
				- 중식도우미 관리인력 복지포인트 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445	445	○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인건비 75
				○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212
				- 보증금 150
				- 월세 44
				- 관리비 18
				○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사업비 148
				○ 어르신일자리 사업 홍보 10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240	240	○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조성비 240
				- 인테리어 공사비 200
				- 비품 구입비 40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5), p.193

②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4. 5), p.442~443

119)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12828 ('24. 5.14)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 계획”

- 아울러 동 사업은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할 민간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1억 5,000만원)과 월세(4,400만원), 관리비(1,800만원)를 일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요청 하고 있으나,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¹²²⁾에는 임차료(월세)와는 달리 보증금은 지출되면 소모되는 경상적 경비가 아니므로 세출과목 중 사무관리비가 아닌 기타자본이전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자본형성적 사업 이외의 경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되, 자본형성적 경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하는 보증금(1억 5,000만원)을 경상적 경비만 편성되어야 할 세출과목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잘못 편성요청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 통계목(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22)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112, p.136

- 사무관리비(201-01)
 - 6. 임차료
 -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고정자산)에 계상
 - 기타자본이전(406)
 - 3. 무형고정자산
 - 가. 법률상의 권리 취득비용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등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129, p.136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3)
 -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6) 도시교통실

□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업별설명서 p.533)

- 동 사업은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¹²³⁾ 운영 시범사업('24. 1.27~'24. 6.30)에 연이어 7월 1일부터는 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후동행카드를 중단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정예산(401억원)보다 696억 8,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1〉 기후동행카드 운영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 예산	증 액	추경 (안)	산출내역
계	40,100	69,684	109,784	
연구용역비	100 ^{주1)}	-	100	-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주2)}	69,684	109,684	①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추진 ^{주3)} (50만명×30,000원×5개월×60%) 45,000 ② 청년할인 제도 운영 등 18,925 - 청년에 대해 추가할인을 실시함에 따른 환급액 및 운송손실금 18,900 (30만명×7,000원×9개월) - 환급 관련 수수료 등 25 ③ 단기권 출시 (37만 5,000명×17,000원×60%) 3,825 ④ 수도권 확대 (3만명×30,000원×3개월×60%) 1,620 ⑤ 리버버스 연계할인 (5,230명×3,000원×20일) 313

※ 주1) '24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효과분석 용역비(1억원)가 편성된 것임

주2) '24년도 본예산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서울권역 내에서 지하철 및 버스와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된 운송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주3) 시범사업을 통해 기 추진하여 온 사업내용(서울권역 내에서 지하철 및 버스와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본사업 추진 시에도 지속하기 위해 편성요청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534

②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8847 ('24. 5.21) 등 재구성

123)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따릉이 등을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 산출내역을 검토하면, ① 서울권역 내에서 지하철 및 버스(시내·마을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24년 7월 이후에도 본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계연도 중 정산·지원하여야 할 운송손실금 450억원을 편성요청 하고,
- ② 지난 2월 26일부터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일반권과 비교할 때 7,000원을 추가할인 하는 청년할인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189억 2,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청년할인제도 운영시점부터 시범사업 종료시점까지('24. 2.26~24. 6.30)의 이용분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일반권 가격으로 충전·사용하되 사후적으로 추가할인액(월 7,000원)을 개인계좌로 환급 하고,
 - 본사업이 추진되는 시점('24. 7)부터는 연령인증 후 추가할인된 가격으로 청년권을 충전·사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운송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환급액과 운송손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189억원)와 환급 관련 수수료 등(2,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¹²⁴⁾
- 아울러 ③ 기존의 시범사업은 30일 동안 사용가능한 기후동행카드(30일권)¹²⁵⁾만을 운영하였으나, 본사업이 추진되는 '24년 7월부터는 1~5일의 단기권 기후동행카드¹²⁶⁾도 운영하기 위해 38억 2,500만원을 편성요

124)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8847 ('24. 5.21)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확대 계획”

○ 환급액 또는 운용손실금 소요액 : 189억원

- 25만명(만 19세~34세) × 7,000원(추가할인) × 9개월('24년 12월분 제외) = 157억 5,000만원

- 5만명(만 35세~39세) × 7,000원(추가할인) × 9개월('24년 12월분 제외) = 31억 5,000만원

- '24년 12월분은 확정 정산이 이루어지는 '25년 1월~2월에 맞추어 '25년도 본예산으로 지출

※ 청년할인제도는 당초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나, 지난 4월 29일, 만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에게도 확대적용 하기로 발표하고, 해당 연령대의 청년은 청년할인제도의 당초 운용시점('24. 2.26)부터 발표시점('24. 4.29)까지의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 것임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19~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 ('24. 4.29), p.1~2

125) 30일권은 시범사업 추진기간 동안에는 ① 62,000원권(지하철 및 버스)와 ② 65,000원권(지하철 및 버스+따릉이)의 2종이 운영되었으나, 본사업 추진 시에는 ③ 68,000원권(지하철 및 버스+따릉이+리버버스)이 추가될 예정임

청 하고, ④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권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도 확대적용하기 위해 16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으며, ⑤ 기후동행카드의 사용대상을 기존의 버스, 지하철, 따릉이뿐만 아니라 리버버스까지 확대하기 위해 3억 1,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고 시민의 교통비 부담도 경감시키기 위해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은 있으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동 사업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용역이 완료된 이후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 '24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 효과분석용역을 추진하며, ㉢ 해당 용역의 결과를 본사업의 사업계획에 반영한 이후 ㉣ '24년 7월부터 본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나,¹²⁷⁾

126) 단기권은 본사업 추진 시 신규 도입되는 것으로서 1일권(5,000원), 2일권(8,000원), 3일권(10,000원), 5일권(15,000원)이 도입될 예정임

127) ①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16627 ('23. 9.27) “저탄소 교통복지 도시로 도약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3호)

- 서울 권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 분석 등 평가 실시
 -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24년 7월 본사업 계획에 반영

- 추진일정(안)
 -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 '24. 1~'24. 5 ○ 시범사업 효과 분석 : '24. 6
 -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추진 : '24. 7~

②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17552 ('23.10.13)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24. 1~5)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4년 7월 본사업에 반영
- 과업 내용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효과분석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전략 제시 ○ 기후동행카드 발전방안 제시

③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22437 ('23.12.29)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실행계획”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평가용역 실시
 - 용역명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연구 용역
 - 목적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4년 7월 본사업에 반영
 - 절차 : 용역발주 및 계약→착수보고회→1·2차 중간보고회→전문가 자문 등→최종보고회→본 사업 계획 수립

④ 서울특별시(도시교통실),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79

- 실제 시범사업은 지난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되고 있으며,¹²⁸⁾ 그에 대한 효과분석용역은 3월 22일 착수되어 8월 31일 준공될 예정으로 확인되는 바,¹²⁹⁾
 - 추정안 제출시점('24. 5.27)을 경과한 현재까지 효과분석용역의 최종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아 해당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시범사업이 종료('24. 6.30)되더라도 중단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용역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둘째, 동 사업은 단기권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여부가 신중히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본사업 추진시 기존의 30일권 이외에도 단기권도 도입하기 위해 38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이나, 단기권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추정안 제출시점('24. 5.27)을 경과한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신규 추진되는 사업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사업비를 편성요청함에 따라 선(先) 예산확보·후(後) 계획수립이라는 절차적 모순이 발생한 사안에 해당되어 소요예산(38억 2,500만원)의 승인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동 사업은 수도권 확대에 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8)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22437 ('23.12.29)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실행계획”

※ 당초 '24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레일 시스템 개발이 1월말 완료예정임에 따라 시민혼란 방지 등을 위해 '24년 1월 27일로 연기한 것임(코레일 요청 사항)

129) 서울특별시, 재무과-16329 ('24. 3.29) “계약체결 통보(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연구 용역”

○ 착수일자 : '24. 3.22 ○ 완수일자 : '24. 8.31

- 동 사업은 사업영역을 기존의 서울권역에서 수도권까지 확대하기 위해 16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이나,
 - 추경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는 수도권의 어느 구간에 대해 언제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할 것인지, 기후동행카드 중 기존의 62,000원권과 65,000원권만 적용할 것인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금번 추경안에는 '24년도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사업이 4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소관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은 실물 기후동행카드의 결제수단을 확대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입비용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소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은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자에게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을 보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편성요청한 것으로,
 -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와 연계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2〉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추경안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 편성 세부내역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	
도시교통실	지 하 철 9 호 선 1 단 계 재 정 지 원	96,446	8	○ 현금으로만 충전가능한 실물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결제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입비용(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 8,250천원(결제단말기 30대분) -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 4,400천원(결제단말기 16대분) -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 : 3,850천원(결제단말기 14대분)
도시교통실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55,988	4	
도시교통실	신림선 경전철 재정지원	17,060	3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x)21,272 42,382	(x-) 58	○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자에게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을 보조하는 시범사업(가칭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편성 : 58,500천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555~567, p.615~619

□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579)

- 동 사업은 기정예산 11억 2,700만원(전액 시비)보다 11억 500만원(국비 5억 5,000만원¹³⁰⁾ 포함)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4-33〉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x-) 1,127	(x550) 1,105	(x-550) 2,232	
사 무 관 리 비	(x-) 333	(x75) 75	(x75) 408	○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임차 및 운행 : 7,500만원 [3억원 × (3/12개월)]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x-) 683	-	(x-) 683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x-) 90	-	(x-) 90	-
시 설 비	(x-) 20	(x-) 30	(x-) 50	○ 정밀도로지도 신규 제작 : 3,000만원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	(x475) 1,000	(x475) 1,000	○ 새벽동행버스 신규 제작 : 10억원 (10억원×2대×50% ^{주1)})

※ 주1) 버스 1대당 제작비용은 10억원이나, 버스 제작기간과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만 편성요청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4. 5), p.580

- 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노동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① 도봉산역과 영등포역 사이 구간(25.7km)에 자율주행버스를 임차하여 새벽동행버스를 운행하고자 **사무관리비** 7,500만원(전액 국비)을 편성요청 하고, ② 새벽동행버스 2대를 신규제작 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억원(국비 4억 7,500만원 포함)을 편성요청 하였으며,¹³¹⁾

130)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24. 3)되어 편성요청된 것임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847 ('24. 3.26)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결과 알림”

131)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2564 ('24. 2.20)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영 계획”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한 스마트 도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¹³²⁾ 정밀도로지도를 신규제작 하고자 시설비 3,000만원(전액 시비)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정밀도로지도 신규 제작(시설비 3,000만원)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¹³³⁾

- 서울시의 「2024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과 「2024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¹³⁴⁾

- 추경안 제출시점('24. 5.27)을 경과한 현재까지 해당 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편성사례에 해당하여 소요예산(3,000만원)의 승인여부가 신중히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32)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16559 ('21.12.15) “「서울 비전 2030(스마트 입체교통) 달성」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 기본계획”

133) 사업부서는 '22년도에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정밀도로지도를 1개월간 제작한 사례가 있음[다만, 당시에는 용역비(5,500천원)가 “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898 ('22. 9. 7) “청와대 주변 자율주행버스 운행 관련 정밀도로지도(HD맵) 제작 계획”

134) 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3. 7), p.58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대상 : 기술분야 검토 신규 용역(전액 국비 및 구비 포함 제외)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②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2024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24. 3), p.7~8

1.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 명확화

(2) 기타 개별법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조달청 용역 분류 체계에 따른 기타 개별법 기술용역은 타당성심사 대상
(예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은 심사대상)

7) 기후환경본부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별설명서 p.615)

○ 동 사업은 당초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정 예산 254억 2,200만원(국비 127억 6,700만원 포함)보다 169억 6,000만원(국비 85억 500만원 포함)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표 4-34〉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x12,767) 25,422	(x8,505) 16,960	(x21,272) 42,382	
기 존 의 국고보조 사 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x12,767) 25,422	(x8,505) 16,902	(x21,272) 42,324	○ 조기폐차 (x8,128) 16,257
					- 4등급 조기폐차 (x5,433) : 300만원 × 3,622대 10,866
					- 5등급 조기폐차 (x683) : 200만원 × 683대 1,366
					-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x2,012) : 2,500만원 × 161대 4,025
					○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x52) 105
					- 1톤 화물차 전동화 (x52) : 1,500만원 × 7대 105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x324) 540
					- 지게차 전동화(리튬인산철 배터리) (x108) : 3,000만원 × 6대 180
					- 지게차 전동화(리튬이온 배터리) (x108) : 3,000만원 × 6대 180
					- 지게차 전동화(수소연료전지) (x108) : 6,000만원 × 3대 180
서울시의 신 규 자차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	(x-) 58	(x-) 58	○ 기후동행지원금(가칭) 시범사업 (x-) : 180명(신청자) × 6만 5,000원 × 5개월 5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616~617

-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에 중앙정부(환경부)의 확정내시('23.12)¹³⁵⁾와 시민수요, 실제 보조금 지원단가를 고려하여 기정예산 254억 2,200만원

135) 환경부, 교통환경과-3538 ('23.12.26) “'2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지(운행차, 보증기간, 어린이)”

(국비 127억 6,700만원 포함)보다 169억 200만원(국비 85억 500만원 포함)을 증액편성 요청하는 외에도, 서울시의 신규 자체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5,8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중 ① 조기폐차의 경우, 중앙정부(환경부)가 확정내시한 물량(1만 1,166대) 전부를 반영하였으나, 중앙정부에 의해 전국에 일률적으로 내시되는 지원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실제 지원하고 있는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확정내시된 규모(194억 2,000만원)보다 국비를 7억 8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며,
 - ② 1톤 화물차 전동화와 지게차 전동화(3건)는 '24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시민의 문의가 많아 확정내시대로 전부 반영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였으며, ③ 시민의 수요가 많지 않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은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결과 확정내시된 국비규모(234억 3,200만원)와 추경안 중 국비편성액(212억 7,200만원)이 불일치하는 편성사례로 확인됨¹³⁶⁾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내시하는 지원단가가 서울시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고, 시민의 수요가 많지 않은 사업내역은 예산을 편성한 후 불용처리 하기보다는 일부 감액편성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나,
 - 국비에 대한 교부권한이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지원단가나 사업물량을 임의조정 하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지원단가와 사업물량을 산정하여 중앙정부에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내용이 가급적 수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할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136)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741 ('24. 6. 5)

〈표 4-35〉 국비 확정내시 및 추경안 편성현황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구 분		확정내시('23.12) 현황 ㉑			추경안 ^{주1)} 편성현황 ㉒			차이 ㉓-㉑		
		지원 단가 (천원)	지원 물량 (대)	국비 규모 (백만원)	지원 단가 (천원)	지원 물량 (대)	국비 규모 (백만원)	지원 단가 (천원)	지원 물량 (대)	국비 규모 (백만원)
합계		-	11,659	23,432	-	11,327	21,272	-	△332	△2,160
① 조기 폐차	4등급 조기폐차^{주2)}	3,700	9,622	17,800	3,000	<u>9,622</u>	<u>14,433</u>	<u>△700</u>	-	<u>△3,367</u>
	5등급 조기폐차^{주2)}	1,600	1,183	946	2,000	<u>1,183</u>	<u>1,183</u>	<u>400</u>	-	<u>236</u>
	건설기계 조기폐차^{주2)}	3,730	361	673	25,000	<u>361</u>	<u>4,512</u>	<u>21,270</u>	-	<u>3,839</u>
②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1톤 화물차 전동화^{주2)}	15,000	8	60	15,000	<u>8</u>	<u>60</u>	-	-	-
	저감장치 부착 ^{주2)}	3,300	168	277	3,300	100	165	-	△68	△112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주2)}	15,000	2	15	15,000	1	7	-	△1	△7
③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지게차 전동화 (리튬이온배터리)^{주3)}	30,000	7	126	30,000	<u>7</u>	<u>126</u>	-	-	-
	지게차 전동화 (리튬이온 배터리)^{주3)}	30,000	7	126	30,000	<u>7</u>	<u>126</u>	-	-	-
	지게차 전동화 (수소연료전지)^{주3)}	60,000	4	144	60,000	<u>4</u>	<u>144</u>	-	-	-
	저감장치 부착 ^{주3)}	11,000	4	26	11,000	2	13	-	△2	△13
	엔진 교체 ^{주3)}	16,500	260	2,574	16,500	20	198	-	△240	△2,376
	항타항발기 전동화 (리튬이온 배터리) ^{주3)}	90,000	1	54	90,000	1	54	-	-	-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 ^{주2)}	300,000	1	150	300,000	1	150	-	-	-
	전기굴착기 보급 ^{주2)}	20,000	21	210	20,000	10	100	-	△11	△110
④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카메라) ^{주2)}	50,000	10	250	50,000	-	-	-	△10	△250	

※ 국비규모 = 지원단가 × 지원물량 × 국비 지원비율

밑줄과 굵은글씨로 표시된 7개의 사업내역만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 요청된 것이며, 나머지 사업 내역은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임

주1) 기정예산과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된 부분을 합산한 것임

주2) 전체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 50%

주3) 전체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 60%

자료근거 : ① 환경부, 교통환경과-3538 ('23.12.26)

② 서울특별시, 「2024년도 예산서」, p.748

③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221 등 재구성

○ 아울러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민간경상사업보조(5,800만원)**의 경우, '23년 7월 말일까지 기본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중 보조금 수령 후 1년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2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을 보조하는 서울시 자체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인 바,

- 사업부서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¹³⁷⁾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¹³⁸⁾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나,¹³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보급·개조·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자, 개조자, 교체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일 뿐 폐차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도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있는 개인까지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13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각목 생략)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138)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4등급과 5등급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

139)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7812 ('24. 4.25) “-조기폐차 후 차량 미구매자-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경우에도 4·5등급 자동차의 소유자가 조기폐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기본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일 뿐 조기폐차 이후 차량 미구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¹⁴⁰⁾에는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의무 부담분 외에 추가로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사업은 보조사업과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사업은 내용상으로 구별되는 자체사업을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시켜 일괄 편성함으로써 소요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 중 신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5,800만원)은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140)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93~94

8) 문화본부

□ 부적정 예산과목 수정 필요

-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648)
-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652)

-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및 운영은 대도구 등 공연물품 창고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고,

〈표 4-3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40
		◦	대	도	구	등	공	연	물	품	창	고	조	성	등	40
		-	파	레	트,	파	레	트	랙	등	물	품	구	입	등	40,000,000원

-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은 강북센터에 CCTV 설치·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00만원)와 주차장 캐노피 등을 설치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3억 7,300만원)를 포함한 4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03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30
		◦	강	북	센	터	C	T	V	설	치	-	운	영	1,200,000원*25대	30
	공	기	관	등	에	대	한	자	본	적	위	탁	사	업	비	373
		◦	강	북	센	터	주	차	장	캐	노	피	제	작	400,000원*60m ²	24
		◦	강	북	센	터	주	차	장	캐	노	피	설	치	6,000,000원	6
		◦	서	초	센	터	악	기	구	입	비	343,000,000원			343	

○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¹⁴¹⁾,

- 증액 편성요청된 사업내용은 각각 창고 조성, CCTV 설치·운영으로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38〉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내용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p>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p> <p>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 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p>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제반 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역사문화권정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경상적 경비 외의 제반경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별설명서 p.659)

○ 동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중 훼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¹⁴²⁾ 됨

141)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3. 7), p.135

142)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4007 ('24. 2.13) “2024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사업 확정통지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령”

※ 관계 법령 시행 전에 내시된 공문으로 개정되기 전 용어인 “문화재”를 사용하고 있음

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국비 28억 6,200만원과 그에 대응되는 시비 7억 6,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9〉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x19,499) 28,733	(x2,862) 3,628	(x22,362) 32,362	
시설비	(x13,518) 19,312	(x2,365) 3,378	(x15,883) 22,690	○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 등 3,378
자치단체 자본보조	(x5,981) 9,421	(x497) 249	(x6,478) 9,671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4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659

- 동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전시관 등 보수정비 대상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율이 달라지는 사업으로, 143) 증액요청된 시설비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성북동 별서¹⁴⁴⁾에 대한 토지매입비 등에 33억 7,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국가등록문화재(국비 5 : 시비 5)의 수는 감소하고, 국가지정문화재(국비 7 : 시비 3)의 수가 증가되어 국고보조금이 증가(4억 9,700만원)하였음에도 매칭되는 시비는 감액(△2억 4,800만원)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 4,900만원 증액요청하는 것임
- 증액편성 요청된 동 소요예산은 국비 확정에 따른 국·시비 조정요청건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23년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¹⁴⁵⁾이 지난 '24년 2월,

143) ①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7 : 시비 3)
②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5 : 시비 5)
③전시관 유지보수 (국비 3 : 시비 7)

144) 서울 성북동 별서(서울 城北洞 別墅) :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이 살던 별궁의 정원
분류 : 자연유산 / 명승 / 역사문화경관 지정일 : '20. 9. 2

14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146)을 개정하여 5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문화재”의 명칭이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 바,

- 세부사업명에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가 아닌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¹⁴⁷⁾
- 따라서, 서울시가 임의로 세부사업명에 개정된 용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국고보조금을 내시하는 “국가유산청”에 세부사업명 변경 등을 건의하여 개정된 법률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사업별설명서 p.684)

○ 동 사업은 현재 황성에 건립중인 문화유산보존센터(舊 통합수장고)가 '25년 7월 개관 예정으로, 5개 기관¹⁴⁸⁾에 분산된 소장품의 현황을 조사하고 격

-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시행 '24. 5.17] [법률 제19409호, '23. 5. 16, 제정]

- ◇ 제정이유 :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46) 「정부조직법」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4. 5.17] [법률 제20309호, '24. 2. 13, 일부개정]

※ 법률 제2030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4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3. 7), p.94

4. 세부사업의 설정

-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

-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사용(1:1설청, 합병불가)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해야 함

148) ①서울역사박물관, ②서울시립미술관, ③한성백제박물관, ④서울공예박물관, ⑤서울우리소리박물관

납위치를 지정하는 용역 등을 통해 이후 운송시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사무관리비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표 4-40〉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14,259	650	14,909	
사무관리비	76	650	726	○ 서울시 5개 기관 위탁소장품 포장용역 600 ○ 위탁소장품 격납배치 용역 50
시설비	12,999	-	12,999	
감리비	1,180	-	1,180	
시설부대비	4	-	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685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은 공사중 장애 발생 등을 사유로 예산현액(239억 6,000만원)의 45.7%, 109억 5,800만원이 '24년도로 이월된 바,¹⁴⁹⁾ 사업추진중 장애발생으로 당초 '24년 11월 준공예정이었던 수장고 건립공사는 '25년 4월로 준공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되어
- 회계연도내에 준공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수장고에 격납될 예정인 소장품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포장용역이 추경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149)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5090 ('24. 4. 2)

□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사업별설명서 p.716)

- 동 사업은 서울공예박물관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공공운영비 7,5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임¹⁵⁰⁾

〈표 4-41〉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조 정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3,848	75	3,924	
기간제근로자 등 보 수	362	-	362	
사 무 관 리 비	125	-	125	
공 공 운 영 비	3,170	75	3,246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75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8	-	8	
특정업무경비	33	-	33	
재 료 비	30	-	30	
시 설 비	99	-	99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9	-	1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716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의 경우에는 경상적 성격이기보다는 자본형성적 성격의 재원으로 사료되는 바, 이미 '24년도 본예산에서도

150) '25년 1월부터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저감장치를 설치하고자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①기획조정실 소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1억 3,500만원), ②문화본부 소관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7,500만원), ③물순환안전국 소관 **독동 재난 체험관 운영**(1,700만원), ④평생교육국 소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1,000만원)에 GHP(가스열펌프) 부착 소요재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이미 '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5년 1월로 유예한 것이라는 점에서 회계연도중 긴급한 여건변화로 추경을 통해 소요 예산을 긴급히 편성요청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행정국 소관 **노후 시설물 개선** 사업은 서소문청사의 GHP를 교체하기 위한 재원을 **시설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어¹⁵¹⁾ 동 소요예산의 예산과목은 **공공운영비**가 아닌 **시설비**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공공운영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기편성된 재원(840만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추경안을 통해 편성요청된 재원과 기편성된 재원에 대한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업부서가 본예산 심사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서는 해당 방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사업별설명서가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예산서」, p.1070
※ 행정국 **노후 시설물 개선 시설비**
○ 서소문청사 1동 GHP 교체 1억원

〈표 4-42〉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역	소요예산
공공운영비계				3,170
○	법정검사수수료 및 보험료(영조물 등)			15
○	시설물 유지보수(건축, 기계, 전기, 조명)			107
○	정보통신 회선			28
○	무인경비시스템			24
○	서울공예박물관홈페이지 유지관리			104
○	공예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91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43
○	정보시스템 본인 확인 서비스 사용료			3
○	문자전송서비스 사용료			5
○	정보통신 유지관리 용역			344
○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670
○	전시실 안전지킴이 용역			716
○	안내용역			486
○	청소용역			435
○	청사 감역방역 및 해충 소독용역			61
○	소방 정기점검 대행용역(법정)			10
○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법정)			12
○	목동수장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용역			6
○	박물관 관리 각종 우편물 발송			2

※ 자료근거 : 문화본부,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23.11), p.1054

9) 관광체육국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736)

- 동 사업은 방침을 사업근거로 서울 상징물중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굿즈 제작, 판매, 유통 등의 업무를 서울관광재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굿즈 추가 제작비 등을 위해 출연금 9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630억 5,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출	연	금	63,054	62,122	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 서울관광 해외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TV매체 활용 광고 550,000,000원*1회 -서울관광 기념품 홍보마케팅 11,400원*33,500개 			931		
				550	-	-
				381		

- 관련 방침(152)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업무조정을 통해 ‘서울브랜드(서울마이소울)’ 관련 굿즈 등의 업무는 관광재단으로, 상징물중 ‘해치’ 관련 제품 개발 등의 업무는 디자인재단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확인됨

- 다만,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7조는¹⁵³⁾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응

152) 서울시, 서울브랜드담당관-1720('24. 2.21), “서울 굿즈 업무체계 조정계획”

15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을 통해 상징물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징물 관련 사업을 방침에 근거한 업무 조정을 통해 조례상 해당 사업을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가 상징물 관련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한다면 방침에 근거하기 보다는 출연기관도 상징물 관련 업무에 대해 위·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상 근거를 명시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됨

- 따라서 조례상 공공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현 조례에는 불명확하여 추가적인 출연금 편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은 재단의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서울시 고유의 상징물 사무가 방침을 통한 업무 이관으로 서울관광재단의 고유사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은¹⁵⁴⁾ 업무 위탁 및 대행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침에 따른 업무 이관이 아닌 관련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이후 사무 위탁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54)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서울미식주간**(사업별설명서 p.741)

- 동 사업은 서울의 식문화를 알리는 서울미식주간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고자 **행사운영비**를 기정예산(5억원)보다 1억원 증가한 6억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44〉 서울미식주간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500	100	600	
행사운영비	500	100	600	○ 서울미식주간 프로그램 기획운영 1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742

- 서울시는 당초 '24년도 본예산에 3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1억 2,000만원 증액된 5억원으로 의결하였고, 금번 추경안에는 1억원을 추가로 증액요청한 것임
- 관광체육국은 '24년도 본예산부터 동 사업을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사업에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는 본예산에 6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서울미식주간**은 금번 증액요청한 규모를 포함하면 6억원이 편성되는 것임
-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등155)에 따라 지난 '21년 9월, 동 사업과 관련된 투자심사 결과, 예산규모 축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적정”을 통보받은

155)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략)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것으로 확인되는 바, 156)

- 금번 추경안에 제출된 증액규모를 고려하면 두 사업의 예산액은 12억 5,200만원으로 당초 투자심사를 받은 15억원보다는 적은 규모이나, 투자심사 결과 조건이었던 “예산규모 축소”에 부합되는 증액요청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5〉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관련 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4년도 본예산	추경편성 요 청 액	'24년도 최종예산 ^{주1)}
총 계	1,152	100	1,252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652	-	652
서울 미식주간	500	100	500

주1) '24년도 최종예산은 제1회 추경이 의결된 시점 기준임

※ 자료근거 : '24년도 예산서 및 '24년도 제1회 추경안 재구성

156)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526 ('21.10. 4) “2021년 제7차(9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붙임 2, 투자심사 사업별 심사결과

※ 7.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개최 [조건부] 사업비 : 15억원

○ 사업명과 목적에 맞는 콘텐츠에 집중하고 예산규모 축소

10) 평생교육국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767)

- 동 사업은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등을 설치하고자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 2,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표 4-4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민	간	위	탁	금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열펌프(가스히트펌프 냉 난방기 실외기)저감장치 설치 10,778,000원*1개 ○ 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필터교체 C 4,298,100원*1개 		10	
					4

- 민간위탁금¹⁵⁷⁾으로 편성요청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에 대한 소요예산은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인 민간위탁사업비¹⁵⁸⁾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57)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127
307-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158)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135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11) 시민건강국

□ 부적정 예산과목 수정 필요

-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p.844)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p.848)

-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¹⁵⁹⁾ 근거한 신규 사회보장 사업으로, 사업 신설을 위한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를 각각 이행하였으며¹⁶⁰⁾ 사업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여 추진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10
	◦ 사업 홍보 및 교육 운영			1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8,037
	◦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 500,000원*16,074명			8,037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1
	◦ 사업안내 전단지 제작 150원*10,000장			1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00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000,000원*100명			100	

15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4.5.20.>

1. 난자동결 시술 비용

2. 정·난관 복원 시술비

3. 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160)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17189('23.11. 2) “서울시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 서울특별시, 스마트건강과-4634('24. 3. 5) “서울시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2)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¹⁶¹⁾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이 편성요청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8〉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내용

편성목	내용 (통계목)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 예시) 국고보조에 의해 민간에 지급하는 보철구 제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국고보조사업 예산은(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포함) 모두 301-01 통계목에 편성 ※ <u>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모두 301-01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u>
	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 ※ 전 주민 대상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 301-03에 편성 ※ <u>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전 주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3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u>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161)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121

12) 재무국

□ 공유재산 반환금 (사업별설명서 p.1009)

- 동 사업은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유재산¹⁶²⁾을 대부 중인 자가 지난 5월 2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로부터 해당 공유재산을 매수함에 따라¹⁶³⁾ 매매계약 체결일('24. 5.20)을 기준으로 기존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기 납부받은 '24년도 대부료 중 미사용분('24. 5.20~'24.12.31)을 반환하기 위해 기타반환금등 1억 8,4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9〉 공유재산 반환금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184	184	
기타반환금등	-	184	184	○ '24년도 대부료('24. 1. 1~'24.12.31) 중 미사용분('24. 5.20~'24.12.31) 반환 : 184,478,984원(반환금) = 298,758,000원(기 납부된 1년분 대부료) - 114,279,016원(사용액) ※ 사용액('24. 1. 1~'24. 5.19) = 298,758,000원 × (140일/366일)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4. 5), p.1010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과 서울시의 「예산편성 잠정기준」 에는 사업명칭 부여시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¹⁶⁴⁾

162) 강서구 가양동 77-2번지 등 12필지(토지 2,020㎡)

163)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당초 '24년도 본예산에 203억 1,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감정평가와 가격사정을 위한 공유재산심의('24. 3)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각가격이 275억 900만원으로 결정되고 해당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금번 추경안을 통해 매각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71억 9,4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① 서울특별시, 재산과리과-5859 ('24. 5.16) “(수정)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반환 계획(강서구 가양동)” ② '24년도 제1회 추경안 중 “세입예산” 등

164) ①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3. 7), p.98
②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3. 7), p.99

- 동 세부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반환금”이라는 사업명칭만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중 미사용분을 반환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반환대상이 ‘공유재산 대부료’가 아닌 ‘공유재산’으로 오인되거나 사업내용이 공유재산을 반환한 자에게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사안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재정정보의 수요자가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제반지식 없이도 실제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을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명(공유재산 반환금)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13) 미래공간기획관

□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 (사업별설명서 p.1047)

- 행정안전부는 훈령 제29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별표 10을 통해 사업명칭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음¹⁶⁵⁾
 -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¹⁶⁶⁾ '23년 1월, 당시 홍보담당관에서도 서울시 전체 실·본부·국과 출연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외국어와 어려운 한자어, 신조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사업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알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¹⁶⁷⁾
- 동 사업의 경우, ①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2억원)과 ②남산~남대문시장 구간 보행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2억원)을 수행하고자 관련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165)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98

166)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어렵거나 낱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5.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167) 서울특별시, 홍보담당관-1240 ('23. 1.25) “2022년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결과 알림”

- 궁극적으로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인 바, 산책로를 의미하는 외래어 프롬나드(promenade)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이 아님에도 사업부서는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로 정한 내용을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어 소요예산 편성여부와는 별개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고 있는 세부사업명 부여기준은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가 제시한 프롬나드 즉, 산책길 조성보다는 그 이전단계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점에서 사업명이 사업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로 판단되어 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5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00	
시	설			비	400
	○ 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200	
	○ 남산~남대문시장 구간 보행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200	

14) 디자인정책관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1053)

- 동 사업은 서울 상징물중 ‘해치’를 활용한 굿즈 제작, 판매, 유통 등의 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이관함에¹⁶⁸⁾ 따라 굿즈 추가 제작비 6억원 등을 포함한 출연금 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5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출	연	금	29,095	28,205	890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890	-	-
	1. 서울굿즈 특화상품 개발	600,000,000원 증액				
	2. '반짝반짝 빛나는 DDP'	290,000,000원 증액				

- 상징물 사무를 관장하는 서울시 **홍보기획관**(브랜드담당관) 방침¹⁶⁹⁾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업무조정을 통해 상징물중 ‘해치’ 관련 제품 개발 등의 업무는 **디자인재단**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서울브랜드(서울마이소울)**’ 관련 굿즈 등의 업무는 **관광재단**으로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명시하고 있음
- **홍보기획관**은 관련 방침으로 업무를 조정할 당시에 디자인정책관은 협조결재를 하였음에도 사업부서(**디자인정책관**)가 서울 상징물중 ‘해치’를 활용한 굿즈 제작, 판매, 유통 등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¹⁷⁰⁾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168) 서울시, 서울브랜드담당관-1720('24. 2.21), “서울 굿즈 업무체계 조정계획”

169) 서울시, 서울브랜드담당관-1720('24. 2.21), “서울 굿즈 업무체계 조정계획”

17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을 근거로 디자인재단의 고유사무라는 의견이나,

- 서울시가 조례로 정하여 직접 관리하는 상징물 관련 사무를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을 근거로 디자인재단의 고유 사무에 포함시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적이며 편의적인 법규 적용 사례 일 뿐만 아니라 이미 관련 방침에도 주체가 아닌 “협조”의 자격으로 결재한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7조는¹⁷¹⁾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을 통해 상징물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정한 상징물 관련 사업을 방침으로만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조례의 위상에도 부합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시켜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가 상징물 관련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한다면 방침에 근거하기 보다는 출연기관도 상징물 관련 업무에 대해 위·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시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조례상 공공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불명확하여 상징물 개발 등을 위한 추가적인 출연금(6억원) 편성 요청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및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운영
 3.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4.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5.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6.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7.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8.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7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 출연금은 재단의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서울시 고유의 상징물 사무가 방침을 통한 업무 이관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의 고유사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5) 주택정책실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사업별설명서 p.1173)

- 동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가 명시적으로 규정 한 것보다 조기에 매입비를 지급하고자 기정예산(293억 9,300만원) 대비 63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52〉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29,393	6,369	35,762	
자산및물품 취득비	29,393	6,369	35,762	○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6,36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174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7조의3(172)은 「주택법」 173)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① 건축공정이 20% 이상에 도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대금의 2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② 건축공정이 35%·50%·65%·80% 이상이 되면 각각 매매대금의 15%에 해당되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③ 매매대금의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잔금은 준공인가 이후에 10%, 이전고시일 이후에 10%를 지급

172) 「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73)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7조의3(임대주택 매입) 제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4. 3.15 단서 신설>

-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퍼센트 이상인 때에 체결 한다. 이 경우 건축공정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20퍼센트로 본다.
-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
 - 잔금은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이후에 총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난 '24년 2월, 우리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¹⁷⁴⁾을 발의·의결함으로써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조례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7조의3에 신설된 단서조항을 근거로 6개 구역의 매매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 매매대금을 조례가 명시한 것보다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기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는 기준 수립부터 선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사업부서는 우리 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24. 2.29)한 지 약 3개월 이상 경과된 현 시점에도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조례가 명시한 것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기준¹⁷⁵⁾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우리 시의회가 임대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이미 의결('24. 2.29)하고, 금번 제324회 정례회 중에 편성요청된 소요예산(63억 6,900만원)을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조기지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사업부서는 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174)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01577

(발의일: '24. 2. 5,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24. 2.27, 본회의 가결: '24. 2.29)

1. 제안이유

- (중략)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사업장의 사업여건 개선 및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주택 인수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3)

175)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업무 처리 기준」 ('23. 5), p.2

3-6. 매입비 지급 방법

- 계약금 : 매입가격의 20%(매매계약 이후)
- 중도금 : 매입가격의 60%(건축공정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 15% 지급)
- 잔금 : 매입가격의 20%(준공인가 이후 10%, 소유권 이전 완료 후 10% 지급)

□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별설명서 p.1211)

○ 동 사업은 기존의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재개발¹⁷⁶⁾하여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세출과목 중 전산개발비의 경우, 응용소프트웨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사무관리비의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7,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53〉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229	229	
사무관리비	-	79	79	○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주1)} 79
전산개발비	-	150	150	○ 응용 소프트웨어 재개발 150

※ 주1)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용역 발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4. 5), p.1212~1213

○ 소프트웨어 재개발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등¹⁷⁷⁾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여야 하는 바,

176) 기존 플랫폼인 건축안전관리시스템 내에 동영상 기록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5544 ('24. 4.18)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177)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3. 7), p.59

- 동 사업은 지난 4월 19일과 4월 22일,¹⁷⁸⁾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하고, 5월 10일, 정보화사업비가 사업부서의 요청액(2억 2,200만원)보다 △4,800만원 감액된 1억 7,4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나,¹⁷⁹⁾
 - 금번 추경안의 경우, 용역 발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300만원)를 제외하고도 2억 2,6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어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1억 7,400만원)를 반영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① 지난 4월 18일, 사업부서가 수립한 사업계획¹⁸⁰⁾에는 '24년 7월부터 '25년 3월까지 9개월간 2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② 지난 4월 22일, 사업부서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한 공문뿐만 아니라 5월 10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의 주관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가 심사결과를 통보한 공문에도 사업기간이 '24년 7월부터 '25년 3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어¹⁸¹⁾ 추경예산을 편성요청한 단계부터 이미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① 사전절차(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비(2억 2,600만원¹⁸²⁾)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고, ② 예산편성단계부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한 경비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78) 당초 심사요청('24. 4.19) 시 오기된 사업비를 수정한 후 다시 심사를 요청한 것임

179) ①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5589 ('24. 4.19) "2024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②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5614 ('24. 4.22) "2024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수정)"

③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담당관-8476 ('24. 5.10) "2024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추경)"

180)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5544 ('24. 4.18)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동영상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181) ①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5614 ('24. 4.22) "2024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수정)"

②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담당관-8476 ('24. 5.10) "2024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추경)"

182) 편성요청된 소요예산(2억 2,900만원) 중 용역 발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300만원)를 제외한 것임

16) 도시공간본부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사업별설명서 p.1231)

- 동 사업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4-54〉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200	200	
연구용역비	-	200	200	○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2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231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용역비(연구용역비 2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24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12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재하고 있어 편성단계부터 예산의 이월이 전제된 사업으로 판단됨
- 사업별설명서의 “2024년도 추진일정”에도 용역시행을 '24년 8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공고 및 발주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용역기간은 5개월 이하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실제 소요예산(5개월분)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용역규모를 고려하면 연도별 분리발주가 사실상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은 소요예산은 2억원, 용역기간을 12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183) 학술용역 사전심사¹⁸⁴⁾시에도 사업비는 2억원, 연구기간은

18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5280 ('24. 5. 7)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2억원

184)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회의록 등)

12개월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어¹⁸⁵⁾ 향후에는 가급적 본예산을 통한 소요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55〉 추경안 사업별설명서 2024년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	
용역시행	'24.08~'25.08	200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4. 5), p.1233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¹⁸⁶⁾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월이 전제된 예산편성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185) 서울특별시, 창의행정담당관-4662 ('24. 5.20) “'24.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붙임 2. '24. 5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세부내용

3.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심의결과 : 적정

◆ 사업비 : 2억원

◆ 연구기간 : 12개월 (2024. 8. ~ 2025. 8.)

186)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7) 푸른도시여가국

□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별설명서 p.1307)

- 동 사업은 '25년도 중 개최될 행사('25. 5~'25.10)를 준비하기 위해 10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행사운영비(10억원)의 경우, ① 국내·외 유명작가를 초청하여 200m² 내외의 초청정원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4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② 국제공모를 통해 150m² 내외의 공모정원 1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5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사무관리비(1,000만원)의 경우, 조직위원회 및 공모전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¹⁸⁷⁾
- 지난 '24년 1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과 '24년 3월 개정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¹⁸⁸⁾에 따르면 시·도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계획수립 이후 “예산편성 전”까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된 경우를 제외

187) 서울특별시, 조경과-6457 ('24. 5.23)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기본계획”

188) ■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10호, '24. 1. 9 일부개정, '24. 2.17 시행)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4. 3.11 일부개정·시행)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생략)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22. 9), p.19

3.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

○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실시

※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반복적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3. 7), p.56

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표 4-56〉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	1,010	1,010	
사무관리비	-	10	10	○ 조직위원회 운영 등 행사 준비 10
행사운영비	-	1,000	1,000	○ 정원조성비 1,000
				- 초청정원 조성비용 (1억 5,000만원 × 3개소) 450
				- 공모정원 조성비용 (5,000만원 × 11개소) 550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4. 5), p.358~359
 ②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308

- 동 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며 총사업비(28억 1,000만원)가 직전 투자심사(28억 5,000만원) 대비 감소된 것이고, '23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기 이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¹⁸⁹⁾

○ 그러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¹⁹⁰⁾은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사업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위치를 일부 이동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다시 투자심사(재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행사개최장소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¹⁹¹⁾

189)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167 ('23. 4. 7)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6741 ('24. 6. 5)

190)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22. 9), p.24~25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3. 7), p.56

19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309

■ 사업내용

○ 위치 : 현재 미정(검토중)

- 추경안 제출시점('24. 5.27)에 임박하여 사업부서가 수립('24. 5.23)한 기본계획에는 서울시 5대 권역 중 녹지가 가장 부족한 서남권 일대의 지역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동작구 소재 보라매공원을 행사개최장소로 검토 중인 것으로 되어 있어¹⁹²⁾ 기존의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장소(광진구 소재 뚝섬한강공원)에서 사업위치가 변경되는 사안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예산편성에 앞서 투자심사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절차(재심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성 사례라는 점에서 소요예산(10억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절차이행 후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동물보호 문화확산** (사업별설명서 p.1339)

- 동 사업은 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②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기 위한 전체 설계비 중 일부를 반영하여¹⁹³⁾ 기정예산(4억 100만원)보다 11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192) 서울특별시, 조경과-6457 ('24. 5.23)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기본계획”

3. 사업개요

○ 위치 : 서남권 일대 시 지역 공원(보라매공원 검토 중)

※ 대상지 선정 사유

- 서울시 5대 권역 중 녹지가 가장 부족한 서남권 일대에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수준 높은 시민대정원(Grand Garden)을 조성하고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정원 인프라 확충

193) 사업별설명서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18억 400만원) 중 11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4. 5), p.1340

〈표 4-57〉 동물보호 문화 확산 추경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기정예산	증 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401	1,100	1,501	
사무관리비	154	-	154	-
행사운영비	100	-	100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	-	4	-
시설비	143	1,100	1,243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설계비 1,1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340

- '24년 1월, 서울시는 ①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②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연천군과 체결('24. 1. 5)한 이후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두 시설을 조성하기로 사업계획¹⁹⁴⁾을 수립('24. 1.30)하였으며,
 - 지난 5월 27일, 서울시는 기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조성사업의 내용 및 기간, 서울시의 의무 및 연천군의 지원, 토지의 매각·매입·사용, 공사 착수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실시협약을 연천군과 체결하고자 시의회에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¹⁹⁵⁾을 제출하였음
- 아울러 조성예정인 시설 중 ①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조성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을 통해 취득하려는 사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¹⁹⁶⁾에 따른 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공

19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2202 ('24. 1.30)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계획(안)”

195)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의안번호: 11-01936, 제출일: '24. 5.27, 소관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예정일: '24. 6.17]

19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② 반려동물 추모관의 경우에는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통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기준가격(78억 200만원)이 2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7)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198)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5월 27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9)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금번 추정안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1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서울시가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연천군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사업내용 등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서야 설계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200)에 따라 설계비를 편성하기 전에 관련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19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19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199)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1-01910, 제출일: '24. 5.27,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상정예정일: '24. 6.14]

20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성요청된 설계비(11억원)는 ①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②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연계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금번 추경안과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은 동일시점('24. 5.27)에 시의회에 제출된 것임에도, 추경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는 두 시설의 설계비가 각각 얼마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전체 설계비 규모만 18억 40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²⁰¹⁾

-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의 붙임자료인 “비용추계 상세내역”에는 ①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계비는 14억 8,400만원이며, ② 반려동물 추모관의 설계비는 2억 8,40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합산한 규모(17억 6,800만원)가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전체 설계비(18억 400만원)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동일시점에 제출된 안건 사이에 설계비 규모가 불일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①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의결결과
: 원안가결('24. 6.14)

② 관련 「실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의결결과
: 원안가결('24. 6.17)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340

18) 물순환안전국

□ 목동 재난 체험관 운영(사업별설명서 p.1375)

- 동 사업은 목동 재난 체험관에 냉난방 배출가스 저감장치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금 1,7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이나

〈표 4-58〉 목동 재난 체험관 운영 추경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조정액	추경(안)	산출내역
계	345	17	362	
공공운영비	0 ^{주1)}	-	0 ^{주1)}	
민간위탁금	345	17	362	○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3대) 17

주1) 공공운영비는 30만원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375

- 이미 지난 '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바,²⁰²⁾ 목동 재난 체험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고자 소요재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다만, 동 사안은 경상적 경비가 아닌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인 민간

202)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가스열펌프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당시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환경부령 제922호, '22. 6. 30, 일부개정]

위탁사업비²⁰³⁾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4년도 본예산에 기편성된 기후환경본부 소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부의 내시²⁰⁴⁾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²⁰⁵⁾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예산편성 및 집행에 앞서 정확한 예산과목인 **민간위탁사업비**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부서의 예산과목 오류를 감수하지 않은 예산부서 또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135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사업의 사업비
 -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204) 환경부, 대기총량과-2699 ('24. 4.26) “20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교부결정 알림(서울시)”

- ※ 붙임 : 교부결정 통지서
 - 예산과목 : 301-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205) 서울특별시, 「2024년도 예산서」, p.747

- ※ 기후환경본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민간시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74억 6,500만원

5. 세출예산 감액 편성요청 사업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0개 세부사업에 대해 △4,350억 9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을 포함한 51개 세부사업 △2,053억 4,6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하고,
 -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사업**을 포함한 29개 세부사업에 △2,296억 6,300만원을 감액 조정 요청한 것임

〈표 4-59〉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요청한 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회계명	세부 사업수	기정예산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총 계	80	5,631,407	△ 435,009	5,196,397
일반회계	51	3,136,307	△ 205,346	2,930,961
특별회계	29	2,495,099	△ 229,663	2,265,436

- 감액 요청된 80개 사업중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54억원)을 포함한 17개 사업은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요청한 것으로 총 △233억 1,000만원을 감액 요청한바,
 -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 요청한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5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및 설계비 집행시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54억원 전액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60〉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편성 요청한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물 순환 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6,484	△6,484	-
시민건강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5,400	△5,400	-
재난안전관리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관리계정)	5,300	△5,300	-
기후환경본부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2,613	△2,613	-
재난안전관리실	성 동 교 확 장	1,000	△1,000	-
푸른도시여가국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디자인 공모	500	△500	-
도시공간본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	480	△480	-
시민건강국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300	△300	-
미래청년기획단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200	△200	-
평생교육국	미래시민학교 (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운영	200	△200	-
도시공간본부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	200	△200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190	△190	-
균형발전본부	서초 염곡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180	△180	-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58	△158	-
문화본부	제10회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 개최	100	△100	-
푸른도시여가국	공유재산관리	2	△2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0.9	△0.9	-

-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액요청한 80개 사업중 30억원 이상 감액요청한 사업은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48억 9,300만원)을 포함한 13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요청한 사업(4,350억 900만원)의 92.3%, △4,014억 2,700만원으로 검토됨
- 감액 요청한 사업중 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정전출금으로 9,52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감액 및 '23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라 △1,631억 3,900만원을 감액 요청한 것임
- ②**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유후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과 편의시설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당초 27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신청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48억 9,300만원을 감액 요청한 것임
- 그 외 ③**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의 경우, 당초 6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약관리센터조성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45억 2,700만원을 감액 요청한 것임

〈표 4-61〉 감액요청된 사업중 30억 이상 감액 요청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감액	추경안
복지정책실	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952,715	△163,139	789,576
복지정책실	의료급여사업	1,914,995	△125,534	1,789,460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도시개발)	348,300	△57,900	290,400
기획조정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76,112	△8,414	67,697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6,715	△6,692	22
물순환안전국	난치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6,484	△6,484	-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6,111	△5,641	470
시민건강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5,400	△5,400	-
재난안전관리실	영등포로터미 구조개선(교통관리계정)	5,300	△5,300	-
주택정책실	②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27,527	△4,893	22,633
시민건강국	③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6,145	△4,527	1,617
재난안전관리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12,109	△4,000	8,109
재난안전관리실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7,000	△3,500	3,500

○ 아울러 미래청년기획단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에 ①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100%, △2억원)과 ②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100%, △1억 9,000만원), ③서울 청년정책 공모전(△99.7%, △2억 6,700만원 감액²⁰⁶), ④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99.6%, △66억 9,200만원 감액²⁰⁷)에 대해 사실상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 요청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206) 기집행액 (75만원) 제외

207) 기집행액 (2,200만원) 제외

- ①**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은 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 전액 감액 요청하고, ②**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전액 감액 요청하는 것이며 ③**서울 청년정책 공모전**과 ④**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사업종료 등에 따라 기 집행예산을 제외한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 경정 요청한 것임
- 추가경정예산이 기정예산의 증·감 조정을 통해 세출재원을 재배치하는 것이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6개월 동안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다가 사업 기간 종료 및 사업 종료 등의 사유로 예산액 전액을 감액 조정 요청하는 것은 '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4년도중 실제 집행가능성을 검토 조차 하지 않고, 예산확보만을 주력한 결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로 판단됨
-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래청년기획단에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V. 기타검토 의견

1. 사업별설명서 작성 개선 관련

- 사업별설명서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²⁰⁸⁾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²⁰⁹⁾을 통해 예산서 등 주요 서식을 정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 서식 또한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준에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사업별설명서 등을 작성할 때 산출근거내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하여 표시²¹⁰⁾하도록 정하고, 산출근거의 산출기초 부분 표시는 자치단체별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금번 추경안에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중 일부를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2개 사업에 대해 지방채 규모를 증·감조정(40억원)하고자²¹¹⁾ 세입,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설명서에는 지방채 재원 조정 내역을 명시하지 않아 세출예산을 조정요청하는 사유와 소요 재원 구성에 대한 연계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8)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서생략)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09)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3. 7), p.158

210) 국(국비), 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기금), 시(시비), 도(도비), 채(지방채)

211)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지방채 △40억원 감액 발행

■ 양재대로 구조개선 지방채 40억원 증액 발행

- 향후 당해연도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소요 재원의 구성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예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²¹²⁾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명 옆에 ‘(신규)’ 라고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거나(시급성), 지난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예측불가능성) 등이 심사기준이 될 수 있어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동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부사업명 옆에 신규 사업임을 병기하여 추경안에 포함된 신규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이 심사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에도 사업명칭 부여기준²¹³⁾은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면서 『△△사업』, 『△△업무』, 『△△실시』, 『△△추진』 등 사업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경제정책실 소관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 기후환경본부 소관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추진**,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

212)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3. 7), p.161

213)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3. 7), p.98

- 시민건강국 소관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주택정책실 소관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공간본부 소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균형발전본부 소관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 물순환안전국 소관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정릉천(성북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 도림천(관악구) 단면 확장 사업** 등은 중복적 표현으로 사업명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출연·출자동의가 필요한 사업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22)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158)
 -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233)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736)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1053)
 -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사업별설명서, p.1165)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별설명서, p.545)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별설명서, p.550)
 -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사업별설명서, p.568)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출연금에 대한 증액요청 5개 사업과 감액요청 1개 사업²¹⁴⁾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증액요청 3개 사업과 신규 편성 1개 사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소요예산중 출자 또는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²¹⁵⁾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출연금을 증액 편성요청한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을 포함한 4개 사업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²¹⁶⁾에 따라 회기시작 15일전인 지난 5월 27일 관련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확인되며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과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24. 5.27)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에 관련 출연·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214)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복지정책실 소관 “서울시복지재단 운영”은 기정예산에 대해 감액(△2억 1,000만원) 편성요청하는 것으로 출연동의안을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15)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16)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 5-1〉 '24년도 제1회 추경안 관련 출자·출연 동의와 관련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24년도 제1회 추경안 출자·출연금	의안명 (의안번호)	제출일	회부일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99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923)	'24. 5.27	'24. 5.3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1,37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924)	'24. 5.27	'24. 5.30
디지털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20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922)	'24. 5.27	'24. 5.30
디자인정책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890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920)	'24. 5.27	'24. 5.30
관광체육국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93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951)	'24. 5.31	'24. 6. 3
주택정책실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21,14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1953)	'24. 6. 5	'24. 6. 5

- 출자금을 증액 편성요청한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를 포함한 3개 사업의 경우에는 의안의 제출기한인 지난 5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217)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확인됨

〈표 5-2〉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과 관련된 3개 세부사업 출자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합 계		60,158	28,186	88,344
도시교통실	①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5,998	20,634	56,632
"	②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24,160	2,172	26,332
"	③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	5,380	5,380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및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재구성

217)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1921, 제안일 '24. 5.27, 회부일 '24. 5.30)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²¹⁸⁾는 의안을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출연금 9억 3,1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의 경우,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24. 5.27) 보다 늦은 지난 5월 31일 제출되었고,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을 위해 출자금 211억 4,4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은 지난 6월 5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는 단서로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의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24년 5월 27일 이후 ①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과 ②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 우리 시의회가 회의규칙중 단서조항을 통해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아 의안제출을 지연시킨 사업부서에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18조²¹⁹⁾는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 이후 출자·출연 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편성요청된 출자·출연금은 관련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1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 ② (생략)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9)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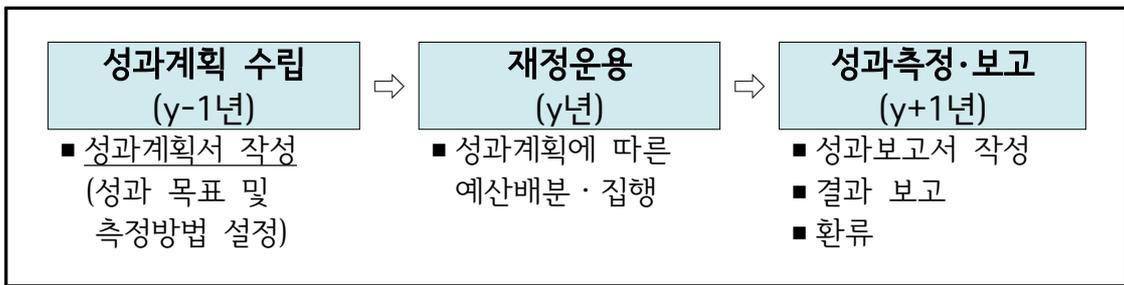
VI.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

1. 성과계획서 검토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²²⁰⁾

〈표 6-1〉 성과 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p.59

- 220)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8.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지방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사료되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예산 요구 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①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하고, ②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③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음²²¹⁾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 '16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예산 확정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사례가 없고, 조직개편(신설·변경·폐지) 및 추경예산 편성 후에도 최종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①예산변동으로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정해지거나 ②조직이 신설되었음에도 소관 성과지표가 수립되지 않거나 ③조직이 폐지되어 당초 설정한 성과지표가 필요 없게 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재정활동 성과관리체계 구축 의무²²²⁾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은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주요 성과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21)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167
○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
○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222)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45조 7,405억원)보다 3.4%, 1조 5,585억원이 증가된 47조 2,990억원으로 조정요청하는 것으로 성과계획서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성과계획서를 수정반영하지 않을 경우, '24 회계연도 결산시점에 성과보고서상의 성과목표, 지표, 예산액 등 주요 성과정보가 성과계획서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 성인지예산제 검토

- 성인지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²²³⁾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²²⁴⁾
- 「지방재정법」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²²⁵⁾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²²⁶⁾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2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2조(정의)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서로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224)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225)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226)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8. 성인지 예산서

- 다만,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책무²²⁷⁾를 부여한 바,
- '23년 11월, '24년도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수정 의결되었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보다 3.4%, 1조 5,585 억원 증액된 예산으로 경정요청하는 것은 물론, 성인지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신규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어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27)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3조(책무)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 「지방재정법」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 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²²⁸⁾
- 「2024~2028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3년 11월, '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1개)와 특별회계(12개), 기금(19개)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24년도 예산이 수정 의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1조 5,585억 증액된 47조 2,990억원으로 경정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28)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표 6-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24년도 예산안)	'24년도 본예산 (의회의결) (A)	'2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총계	45,723,035	45,740,517	47,299,083	1,558,566	3.4
일반기계	33,055,427	33,049,200	34,205,240	1,156,040	3.5
특별회계	12,667,607	12,691,316	13,093,843	402,527	3.2

- 다만, 「지방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²²⁹⁾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은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에 해당되어²³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지방재정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²³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은

229)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30)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행정안전부,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23. 8), p.3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변경 가능(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수립 직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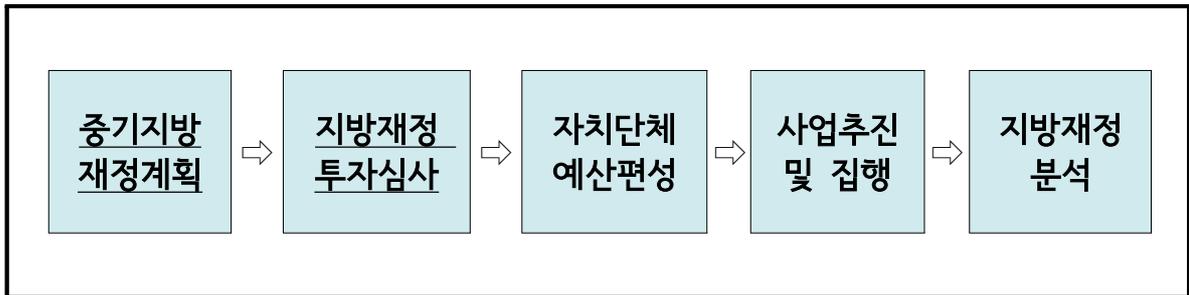
231)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바,²³²⁾

-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인 **행사성 사업**²³³⁾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반영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6-3〉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p.1 (일부발췌)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7건, 80억 8,000만원)에 대해 「지방재정법」²³⁴⁾에 따른 사전절차인

23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33)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34)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24년도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사업부서는 본예산 편성시기를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재정법」²³⁵⁾ 및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의 사전절차 미반영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²³⁶⁾를 근거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 이는 법령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법적 사전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은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 서울시는 회계연도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부서에서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사유·시기·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35)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6) 서울특별시, 「'21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21. 4), p.80

5. 지방재정 투자사업 체크리스트

②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예외사유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및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여부

〈표 6-4〉 행사성 사업 증액 편성현황 (3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기정 예산	증감액	추경안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반영	투자 심사
문화재정책과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식 재현	1,927	330	2,257	X	'21. 6.24
조 경 과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85	290	1,375	X	'23. 3.31
박 물 관 과	서 울 아 트 전 시 (舊아트서울 활성화 사업)	1,200	80	1,280	X	'23.10.16
조 경 과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930	190	1,120	X	'23. 9.22
조 경 과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1,000	1,000	X	'23. 3.31
관광산업과	서 울 미 식 주 간	500	100	600	X	'21. 9.27
기 획 예 산 과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	448	448	X	'23. 5. 3

※ 사업비중 행사운영비(통계목) 예산만 표기